

정치 형태

목차

- 1 교회
- 2 교회 정치
- 3 회중

정치 형태

- 4 교인
- 5 집사와 집사 직분
- 6 장로와 당회
- 7 안수식
- 8 장로와 집사의 선출과 안수, 임직
- 9 목회자
- 10 노회
- 11 개척 교회
- 12 총회
- 13 소위원회, 위원회, 부서
- 14 수정안 규례

제 1 장 교회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 1.1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세의 근원이 되신다. ¹ 세상적인 것이든 교회 속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정하신 것 외의 권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² 세상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 정하신 것이다. ³ 교회 안에서의 권세는 하나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정해진다. ⁴ 하나님 권세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 주어진다. ⁵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 1.2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기묘자요 모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다. ⁶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과 모든 통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⁷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유일한 왕이시며, ⁸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신다. ⁹

¹ 마 28:18; 욕 37:23.

² 롬 13: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I. 참조.

³ 요 19:11.

⁴ 요 5:26-27; 17:2; 계 2:27.

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율법을 강화하고, 그분의 통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은혜로 주셨다. ¹⁰

하나님 말씀과 복음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 1.3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인 성경으로 인도하시며 ¹ ¹ 교회를 위한 사역에서 권세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신다. ¹²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사용을 통해 정당하고, 질서있게 행사되어야 한다. ¹³ 하나님 영이신 성

정치 형태

렇게서는 승천하시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사람들을 교회의 권위 있는 직분에 앉히시므로 권세를 행하신다.¹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복음 사역을 통해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행하신다.¹⁵

교회의 본질

- 1.4 성경은 오직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는 모든 시대를 통해 하나요 동일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형성된다.

⁵ 마 20: 25-28; 고후 13:10.

⁶ 사 9:6-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II.3. 참조.

⁷ 요 17:2; 엡 1:21.

⁸ 요 18:37; 계 17:14.

⁹ 엡 1:10, 22.

- 1.5 비록 명확하지 않지만, 보이는 교회의 단일성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파에 의한 분파로 파괴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례전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가 이처럼 가시적인 단일한 교회의 가지로 인식되어야 한다.
- 1.6 신약 교회의 목회와 율법, 예배 그리고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셨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은사 후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 주어지거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추론과 그것에 일치하여 제정되었다.

교회의 사명과 메시지

- 1.7 교회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증거하시기 위한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설교와 복음 증거, 교육, 성례, 예배와 그리고 함께 드리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교인은 그들의 모든 삶의 국면에서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정치 형태

10 롬 12:6-8; 마 16:19; 18:18.

1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I.2.

신앙고백, I.

12 요 14:26; 16:13.

13 고전 14:40.

14 롬 1:1.

15 막 13:11; 벧후 1:21

- 1.8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역을 알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행하시고자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¹⁶ 성령을 보내셨다.
- 1.9 교회의 말씀 선포 사역은 곧 화목에 대한 메시지이다. 교회는 다양한 방법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분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화목케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목케 하셨다"¹⁷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
- 1.10 총회는 교회의 사명과 메시지에 관한 본 주제의 조항 안에서 필요할 경우 2/3의 찬성 투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명 선언문을 채택하여 공포할 수 있다.

¹⁶ 롬 5:5.

¹⁷ 고후 5:19.

정치 형태
제 2 장
교회 정치

교회 정치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2.1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역이 질서 정연한 방법으로 지시되어야 한다. 성경의 예와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정의되는 정치는 것처럼 필요한 지시와 질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¹⁸ 본 책, "정치 형태" *Form of Government* 는 "연합개혁장로교회"(ARPC,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의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¹⁹ 리더십과 권세란 2 가지에 대해 규명해 주고 있다.
- 2.2 교회의 정치 형태에 대해 성경이 상세히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ARPC 가 채택하고 있는 장로교의 정치 형태는 신약 성경과 일치하며 그것에 근거하고 있다.²⁰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는 교회 법정 안에서 장로들에 의한 통치 방식이다.²¹

장로교의 정치 형태 - 역사적 배경

- 2.3 장로교의 정치 형태가 처음 주어진 것은 1542년 제네바에서 칼빈에 의해서였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John Knox)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과 칼빈에게서 배운 목회자들은 장로교의 원리에 커다란 호감을 갖게 되었다. 1560년

¹⁸ 고전 14:40; 골 2:5.

⁹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7, 128.

²⁰ 출 18:13-26; 딤후 1:5; 벧전 5:1-5.

²¹ 딤후전 4:14; 행 15:1-2, 22-29.

정치 형태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닉스는 "스코틀랜드 제 1 치리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추후 스코틀랜드 교회의 정치와 자국 개혁신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교파의 정치적 기초가 된)에 장로교 원리를 스코틀랜드 교회 목적에 맞도록 사용했다.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의 "제 2 치리서", 1581 년에 비준된, 는 장로교의 주장을 오늘날의 형태에 더욱 가깝게 발전시켰다.

- 2.4 1643 년 런던에서 소집된 웨스트민스터 총회(The Westminster Assembly)는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에 추후영국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채택된 "장로교회의 정치형태"(Form of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를 작성하여 추가했다. 연합교회(1733 년)와 개혁신교회(1743 년)는 모두 이 문서를 각자 자기들 교파 교회법의 기초로 계속 고수했으며, 후에는 그것을 미국에 전했다. 1782 년 11 월 1 일, 필라델피아에서 이루어진 두 교파의 연합개혁신교회로의 통합 역시, "공예배와 교회의 정책에 대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편에 따르도록 " 유보시키고, 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한 "정치 방식"을 채택했다.
- 2.5 교회 정치서는 1799 년 개정, 채택되어 ARPC "헌법"(신앙고백과 교리문답, 치리서,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위한 규칙서 그리고 몇 가지의 부록과 함께)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1822 년 남쪽의 연합개혁신총회가 모교회에서 탈퇴하여 독립교단을 구성했을 때도 1903 년 교회 안에서의 악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1908 년 새로운 개정안이 채택되어 처음 발행될 때까지 본 문서가 승인되었다. 1929 년 총회는 보다 발전된 개정을 요구하므로 그것이 1934 년 완성, 채택되어 1937 년 처음 발행되었다. 1949 년 추가적인 개정판이 제안되어 1953 년 "헌법"으로 재정되었다. 1965 년에는 교회 정치의 다음 판이 제안되어 1971 년 채택되었다.
- 2.6 이와 같은 오늘날의 정치 형태는 2006 년 총회에서 발의되어 2014 년에 채택되었다.

교회정치의 목적

정치 형태

- 2.7 교회정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영적 조건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회정치의 중요한 역할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를 완수하도록 교회 안에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징계권 역시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2.8 교회의 정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예민한 책임 의식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교회의 직분

- 2.9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정치와 징계 그리고 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3 가지의 항구적인 직분을 제정하셨다. 그러한 직분들은 목사²²와 장로,²³ 그리고 집사다.²⁴ 교회 법정에서 다수의 장로들에 의해 교회가 처리되는 장로교의 정치 형태는 교회의 통치에 대한 성경 말씀에 가장 가깝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확고한 믿음이다.
- 2.10 목사와 장로는 교회 법정에서 장로(presbyter)로 함께 역할을 행한다. 그들은 서로 직분이 다르지만, 장로로서 교회 법정에서 동일한²⁵ 발언권과 권위를 유지한다.
- 2.11 이러한 직분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 행하기를 추구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특별한 직분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²⁶ 그러한 직분에 대한 의무를 부지런히 성취하려 하지 않는 자는 특별한 직분에 대한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직분을 맡은 자가 자기

3

²² 연합개혁총회 의사록, p. 12, 1782. 11.1 웨스트민스터 총회, 장로교 정치의 정치 형태

참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세운 직분자들 중에는 사도와 전도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선지자와 같은 몇 가지의 특별한 것들이 있다. 그 외의 일반적인 항존직에는 목사와 교사, 집사 그 외의 교회 지도자가 있다."

² 역사에서 종종 "교회 통치자"로 언급되는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는 앞의 주(note) 참조.

정치 형태

의 임기가 다하기 전에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될 때는 언제든지 자신이 직분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합당한 기관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 2.12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위해 서로 힘이 되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어떠한 직분도 다른 것에 비해 덜 중요하거나 혹은 다른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직분들 사이에 차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헌법

- 2.13 연합개혁신장로교회(ARPC)의 헌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 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B. 대요리 문답
- C. 소요리 문답
- D. 정치 형태
- E. 권징 조례
- F. 공예배 규칙서

²⁴ *Diakonia*.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섬김을 본받아 행하는 직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²⁵ 동등이란 법정에서의 반드시 숫자가 아니라, 발언권과 투표에 있어 동등성을 의미한다.

²⁶ 딤편 4:14; 벰전 5:1-3; 골 4:17.

조직적 회중의 정의와 목적

- 3.1 회중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배와 그리고 교회의 정치 양식에 찬성하고, 지정된 일들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꾼을 뽑아 임명하므로 사역을 위해 결합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다.
- 3.2 회중의 목적은 공적인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위해 준비시키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다.

다른 사역들

- 3.3 교회의 확장을 위해 노회나 당회는 "부속 예배실"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장소를 알아볼 수 있다.²⁷
 - A. 연합개혁장로교회의 기준에 따라 이곳에서는 공예배의 의식을 행하고, 성례전을 행해야 한다.

²⁷ 역사적으로 ARPC는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며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정기적인 공예배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설교소"(preaching station)란 용어를 사용해 왔다. "preaching station"과 "chapel"이란 2 가지 표현은 본질적으로 같은 동의어다.

정치 형태

중은 민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재산의 사용이 노회와 총회에 대한 회중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수탁자 혹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인체로 교회 재산의 여러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A. 회중이 교회재산 소재 관할지역의 민법상 재판권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법과 조례의 조항은 ARPC의 정치 형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회중 가운데 모든 성찬 수배자는 그러한 법인의 회원이 되며, 회원들 중에서 그들의 대리인을 선출한다.
- B. 회중이 법인 조직이 아닐 경우, 개인 수탁자를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C. 법인이나 개인 수탁자 그리고 직임 중인 그들의 후임자는:
 - (1) 회중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위임권을 가지며, 회중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근거로 그들을 대신하여 재산을 팔고 사거나, 임대하고 저당잡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2) 부동산 소유에 대한 권리증을 받아 그것을 행사한다.
 - (3) 그것을 간직하고, 보관한다.
 - (4) 회중의 목표 중진을 위해 기탁된 특별 자금을 관리한다.
- D. 법인의 임원과 개인 수탁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당회와 집사직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3.12 조직 교회는 재산을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 A. 지교회의 회중은 모든 부속적인 것들과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로 하고 노회의 승인을 받아 주차장을 비롯하여 사택과 성전, 교육관이 세워진 교회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저당 잡히고 유지하며 양도, 임대할 수 있다.
- B. 지교회의 회중은 교회의 모든 다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저당잡히거나 유지, 양도

정치 형태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회중의 청구권 외에 노회의 승인에 저촉받지 않는다.

C. 그 외의 모든 재산(지교회의 개별 재산을 포함하여)은 지교회의 회중에 의해 관리된다.

3.13 회중과 교회 재산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 A. 노회의 승인에 따라 재산의 회수에 대해 지교회의 회중 가운데 2/3 이상의 찬성 투표가 있을 경우, 그것을 다음 정기 노회 때 보고한다.
- B. 노회는 합의적인 결과 내지는 대안으로 질서 있는 회수 절차를 이끌어 내도록 조언하고, 자문해 주거나 지교회 회중과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 C. 위원회가 어떤 것이 회수 절차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들은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산에 대한 회수 신청을 제출한 노회기의 1년 후의 다음 정기 때 보고한다.
- D. 투표 결과 지교회 회중의 2/3 이상이 회수에 찬성 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노회는 본 회의에서 회중의 회수 요청을 승인한다.
- E. 회수의 승인 시 노회는 심의 중인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회수를 원하는 회중들에게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안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미불 채무와 부채
 - (2) 노회나 총회로부터 전에 받았던 기부나 지원
 - (3) 회수에 찬성투표를 한 지교회 회중의 비율
- F. 회수를 찬성한 측과 노회는 특별히 자기들 교단에 남아 있는 소수파에 대한 자기들의 재정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노회는 소수파가 앞으로도 자기들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될 때는 회수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G. 지교회의 회중이 앞에서 설명한 회수 절차를 지키지 않을 때, 회중은 재산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

정치 형태

과 소유권 그리고 이권을 자기들이 속한 노회에 물수당할 수 있다.

- 3.14 추후 어느 때든 지교회의 회중이 교회의 명칭을 바꾸기 원할 때는, 노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명칭은 노회에 등록되고, 노회의 정식 서기를 통해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ARPC

교회의 통합을 위한 절차

- 3.15 노회는 당회가 교회법 아래 둘 또는 그 이상의 교회로부터 받은 하나의 교회로 통합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할 때 그 것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A. 통합이 심의 중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 미조직 상태에 있을 경우, 둘 또는 그 이상의 교회를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이 해당 교회들의 당회나 각 노회 혹은 그러한 절차를 요구하는 교회들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 B. 둘 또는 그 이상의 교회는 규정에 따라 정식 소집된 공동의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최소한 2/3 이상의 찬성 투표를 통해 통합에 대한 계획을 각자 입증해야 한다.
 - C. 둘 또는 그 이상의 교회가 각자 다른 노회의 관할 하에 있을 경우, 통합 계획에 대한 각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D. 통합을 원하는 교회들이 미조직 상태일 때, 노회는 교회의 최대 이익을 위해 둘 혹은 그 이상 교회의 통합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3.16 노회에는 교회의 최대 이익을 위해 둘 혹은 그 이상 교회의 통합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A. 노회가 통합이 교회를 위해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그것을 승인할 경우, 둘 혹은 그 이상 교회의 통합을 통과시킬 수 있다.

- B. 승인 후, 노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1) 노회는 공동의회를 감독한다.
 - (2) 회원들의 동의재청이 있을 시 교회의 회원 명부를 작성한다
 - (3) 직분자를 선출한다.
 - (4) 담임 목사의 청빙건에 대해 투표한다.
 - C. 공동의회 후 교회의 통합 승인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 (1) 이때 노회 측에서 예배를 인도한다.
 - (2) 본 예배 시 둘 또는 그 이상의 교회가 노회의 주관 아래 통합되었음을 선포한다.
 - (3) 본 예배 때 노회의 청빙 승인이 미결된 상태에서 목회자를 임명할 수 있다.
- 3.17 노회는 통합이 교회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둘 혹은 그 이상의 교회에 하나의 교회로 통합할 것을 권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 A. 노회가 선출한 위원회는 각기 다른 노회나 관리 기구에 소속된 둘 혹은 그 이상 교회의 통합을 위한 통합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정치 형태

- B. 노회가 선출한 위원회는 통합에 대한 기념예배를 거행할 수 있다.
- (1) 본 예배 때 위원회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교회들이 노회의 주관 아래 통합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 (2) 본 예배 때 위원회는 당회의 회원이 될 장로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감독할 수 있다.
 - (3) 본 예배 때 새로운 당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업무는 노회에 미결 상태로 되어 있는 초대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다.
- 3.18 노회는 교회의 재산과 목회자, 직원, 사역 그리고 교인과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하여 조연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 3.19 모든 부동산과 자산, 채무는 통합된 교회들에 귀속되며, 통합된 교회들의 새로 구성된 당회의 관할에 들어간다.

그 밖에 교회 다른 관계들을 세우는 절차

- 3.20 노회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교회에 협동 목회나 그 밖의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것을 권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관계 형성은 노회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

교회 분리를 위한 절차

- 3.21 회중을 분리시키는 것은 노회의 관할에 속하는 행동이다. 회중의 수와 역할이 정기적으로 공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현저히 감소하거나, 노회 입장에서 그 밖의 다른 이유들, 특히 회중과 교회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될 때, 노회는 공식적으로 교회의 분리를 선언할 수 있다.
- 3.22 노회는 정식 서기에게 수용 교회의 요구가 있을 시 현재 회중의 이명 증서를 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한 청구서는 수용 교회에 직접 보내며, 회중 개인에게는 주지 않는다.

정치 형태

- 3.23 노회의 분리 행위와 동시에 모든 재산과 채무는 노회의 책임이 되며, 노회의 방식에 따라 처리된다.

공동 의회

- 3.24 공동 의회의 목적은 목사와 당회, 집사 또는 보다 상위의 교회 재판국에 부여되는 의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영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공동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A.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임명과 청빙
- B. 장로와 집사(숫자는 회중들에 의해 결정됨) 그리고 회중 가운데 직분자들에 대한 선출
- C. 회중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칙의 결정
- D. 제직회에서 편성하고, 당회의 승인과 제안을 거친 교회 예산안의 통과
- E. 교회 건물의 건축이나 변경을 위한 지출의 승인
- F. 사례비의 결정
- G. 부동산의 구입이나 매각

- 3.25 공동 의회의 정치 규범과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A. 공동 의회는 당회나 노회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된다. 노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므로 공동 의회를 소집한다. 노회는 노회원 중에서 사회를 맡을 사람을 임명한다.
- B. 모든 공동의회는 적어도 개회 7일 전 공지해야 한다. 목사(목사의 부재시 노회장), 부목사, 당회, 회중 그리고 사회자에게 사전 고지가 없이는 회의가 질서있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 C. 회중의 시무 총회는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최한다. 그 밖의 모든 공동의회를 갖는 특별한

정치 형태

- 목적은 공지 사항에 게재하고, 공지 사항에 게재된 것 외의 다른 안건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 D.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지된 의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고지가 없이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처음 회의 후 2 주 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연기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 E.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안건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투표권이 있는 정족수는 성찬 배수자 회원의 1/4 로 구성된다. 교회의 성찬 배수자 회원이 1 천명 이상일 때는 정족수를 회원의 1/10 로 하되, 그 수가 250 명 이하여서는 안 된다.
- F. 성찬 배수자 회원들 가운데 무흠하고(징계 상태에 지 않은) 회의에 직접 참석한 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 G. 투표는 교회의 정치/ 형태에 특별히 지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찬부에 대한 의사 표시나 거수, 기립 또는 무기명 비밀 투표 가운데 당회가 정한 방식으로 한다. 비밀 투표는 목회자의 임명시 요하며, 교회 안에 분쟁이나 폭력 사태의 위험이 있을 때 권장된다.
- H. 모든 공동 의회는 공동 의회 의장이나 당회가 지정한 사람의 사회로 진행되며, 당회 서기나 당회가 지정한 사람은 서기 역할을 한다.
- I. 누구에게도 발언권이나 투표에 있어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사회자는 성찬 배수자 회원들에게 투표 용지가 정확히 배분되도록 주의해서 감독해야 한다.
- J. 모든 공동 의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 (1) 사회자는 공동의회 개최의 선언과 함께 기도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정치 형태

²⁸ 회의의 사회자는 전자 매체의
관점에서 "참석"의 개념을 정해야 한다.

정치 형태

- (2) 사회자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의사록에 기록해야 한다.
- (3) 의사록에 미처리된 업무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전 회의의 의사록을 낭독한다.
- (4) 의사록을 통해 미처리된 업무가 밝혀질 때는 그것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위원회는

필요한 것을 보고하고,

보고한 내용

에 대해 실천을 요구한다.

- (6)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동 회의의 고지 사항에 제시되었을 경우에만 해소집된 회의에서 다를 수 있다.

(7) 폐회하기

전 진행 중인 회의의

의사록을 낭

독하고, 수락한다.

- (8) 폐회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기도로 회의를 마친다.

제 4 장 교인

교인에 대한 정의

정치 형태

- 4.1 성찬 배수자 교인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자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교회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킨 자이다. 성찬 배수자 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 회중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특권이 주어진다.
- A. 공동의회에서의 투표권.
 - B. 본 책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자격이 있을 경우 직분을 맡음.
 - C. 주의 만찬인 성례전에 참여함.
 - D. 자녀가 세례받을 때 대동하고 앞으로 나갈.
- 4.2 성찬 미배수자 회원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인이 아니거나 교회의 성찬 배수자 회원에게 의존하는 어린이이다. 성찬 배수자 회원의 자녀는 모두 장차 성찬 배수자 교회 회원에 들어갈 자들로 목회적인 관리와 정치 그리고 교회의 훈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 4.3 준회원은 일시적으로 교회 안에 거주하거나 그곳의 방문 주기를 증대시키기 원하지만, 자신의 모교회로부터 교회 회원권을 옮기지 않은 자이다.

교회 회원의 의무

- 4.4 교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요구된다:
- A. 은혜란 도구를 열심히 사용한다.
 - B.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스럽게 참여한다.
 - C. 주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물질을 바친다.
 - D.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와 온 세상에 있는 그의 나라를 섬긴다.
 - E.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유지한다.
 - F. 장로들의 권위에 복종한다.
 - G. 복음 증거자로서의 충성된 삶을 산다.

정치 형태

성찬 배수자 교회 회원에 대한 허입 절차

4.5 신앙고백을 통해 교회 회원으로 허입된 지원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는 의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당회의 검증을 받는다.

A. 지원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교회와의 존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될 다음과 같거나 그와 비슷한 질문들에 "예"로 답해야 한다.

(1) 그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기가 죄인이며,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 하는가?

(2) 그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만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가?

(3) 그대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며, 그것만을 믿음과 삶을 위한 온전한 규범으로 받아들이는가?

(4)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므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의지할 것을 약속하는가?

(5) 그대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물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목적을 위해 충성스런 청지기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가?

정치 형태

(6) *그대는 연합개혁장로교회의 교리와 원리가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7) *그대는 교회의 회원으로 있는 동안 본 교회의 정치와 권징에 사랑의 순종 안에서 복종하므로 교회의 화평과 손결,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가?*

B. 당회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때, 지원자는 성찬 배수자 회원에 허입된다. 당회는 회원 자격으로 그 외의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C. 당회는 소수파 혹은 그들의 자녀들 명단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당회 문서에 보관한다.

D. 아직 세례받지 않은 지원자가 성찬 배수자 회원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 의식은 공예배 규칙서, 공예배 규칙서, 8.b.와 일치되게 행한다.

E. 신입 회원은 적당한 방법을 통해 회중들에게 소개시킨다.

4.6 믿음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 성찬 배수자 교회 회원에 허입된 지원자는 당회원들 앞에서 앞에서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기의 신앙을 재확인한다. 당회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 지원자는 성찬 배수자 회원에 허입된다.

A. 비삼위일체의 세례를 받은 지원자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 한다.²⁹

B. 지원자는 당회원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는 면접을 받는다.

정치 형태

C. 당회는 미성년자나 비독리적인 자식들의 이름을 포함

한 모든 관련 자료를
당회 문서에 보관한다.

D. 신입 회원

을 적당한 방법을 통해

회중들에게 소개시킨다.

4.7 교회 회원의 이동은 하나의 단순한 행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회원에 대해 한 회중에서 다른 회중으로의 목회적 관리의 이동으로 보아야 한다.

A. 다른 개신교 신자들의 회중으로부터 성찬 배수자 회원을 신청한 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통해 허입이 결정된다.

- (1) 당회에 그들이 속한 회중으로부터 무흠하다는 사실 확인서 제출과
- (2) 그들의 신앙 간증에 대한 당회의 검증을 통과했을 때.
- (3) _____
- (4) ²⁹ 공예배 규칙서 8.B.1.

B. 무흠 확인

서에 의심이 제기되고,

신앙 간증에 결함이 있거나

그의 동기에서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지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신앙과

이동을 원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당회의 납득할

만한 검증을 통과한 후에만 허입이 가능하다.

C. 회원 자격의 이동은 그것을 다른 교회로부터 직접 받을 때 비로소 인정된다.

D. 당회는 미

성년자나 비독립적인 자식들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당회 문서에 보관한다.

정치 형태

E. 신입 회원

을 적당한 방법을 통해
회중들에게 소개시킨다.

4.8 연합교회의 회원에 지원하는 자는
회원의 이동에 관한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통해 허입이 이루어진다.

A. 연합교회 회원은 당회의 기록 문서에 이름이 등
재된다.

B. 그들은 적당한 방법을 통해 회중들에게
소개되고,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C. 준회원에게는 공동의회시
어떠한 권한이나 특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직책을 가질 수도 없다.

다른 회중으로의 이동을 위한 절차

4.9 교회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하나의 기독교 회중에서 다른
회중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는 자기가 무흠하다
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의 제출이 요구된다. 당회는 허입
교회의 요청이 있을 때만 무흠한 회원의 이전에 대한 승
인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확인서는 회원에게 주어서는 안되며, 허
입을 받는 기구에 직접 보내야 한다.³⁰

4.10 안수 받은 직분자에 대한 확인서는 그들이 안수 받은 사
실만을 확인해 줄 뿐, 그들이 임직자로 이전되는 것은 아
니다.

4.11 부모에 대한 발급 증명서에는 소수자나
딸린 자녀의 수세 여부에 대한 명시와 함께
그들의 이름이 포함된다.

4.12 증명서에는 당회의 서기나 당회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13 교회가 분리될 때는 노회 서기의 확인을 통해 회원권이
유지되고, 이전된다.

4.14. 당회가 회원의 이전에 대한 청구가 없이 그가 다른 교회
에 통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을
때 회원의 이름이 이전의 교회 명부에서 삭제된다.

교회의 회원 명부

- 4.15 당회는 별도의 회원 명부를 관리하고, 매년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
- A. 성찬 배수자 명부는 타교회로 이전했거나 이름이 삭제 혹은 사망한 사람을 제외하고 당회에 의해 허입된 모든 사람으로 작성된다.
 - B. 성찬 비배수자 명부는 아직 교회의 성찬 배수자 회원에 들어오지 못한 세례 받은 미성년자나 교회 회원인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어린이들로 만들어진다.
 - C. 준회원 제도를 실시하는 교회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별도의 명부에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³⁰ 기독교교육 사역직은 이전하는 회원들에 대한 증명서 제도를 마련했다.

- 4.16 당회가 이러 사람들에 대해 회중들과의 좋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전에는 그들의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해서는 안 된다.
- 4.17 전에는 회중들과의 삶에 적극적이었지만, 지금은 질병으로 인해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과 학업이나 군복무 또는 그 밖의 다른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자들의 이름은 명부에 계속 남겨놓아야 한다.

제 5 장 집사와 집사의 직분

집사에 대한 설명과 자격

- 5.1 집사직은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³¹ 교회 안에서 평범한 향존직이다. 집사직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직분이다.
- 5.2 집사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정직하기로 이름이 나며 삶이 모범적이고, 형제를 사랑하며 동정심이 강하고, 판단이 바른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충성되고 열심이 있는 자를 세워야 한다.³²
- 5.3 집사는 회중들 가운데 흠이 없고,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의무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자여야 한다.
- 5.4 당회가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집사직은 회중 가운데 남성 회원을 뽑아야 한다. 각 교회의 당회는 여성도가 자신의 특별한 회중들 사이에서 집사로 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정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교회는 자격을 갖춘 남성도를 집사직에서 섬기도록 세우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³¹ 딤후전 3:8-13.

³² 딤후전 3:8-13.

집사직의 목적

- 5.5 집사의 의무는 회중과 함께 물질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자들과 "구제 사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돕는 것이다. 먼저는 회중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구제할 것이며, 그 다음 교회 밖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정치 형태

- 5.6 또 회중에게 온전한 청지기직의 실천을 권하되, 특별히 십일조 생활을 권하고, 세상뿐 아니라 자기의 동료 성도들에게 후히 베풀고, 대접하는 넉넉한 마음을 권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도록 위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야 한다.
- 5.7 집사는 당회와 협의하여 회중이 받치는 헌금이 쓰여야 할 곳을 계획하고, 헌금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특별 헌금에 대해 당회와 교회의 상위 기관에서 정한대로 받아서 관리하며, 모든 헌금이 정확하게 기록되며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 5.8 회중에게 속한 동산과 부동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재산상의 취득이나 건축 혹은 교회 재산의 변동으로 임시 지출이 필요할 때는, 회중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5.9 회중들은 이러한 사역을 위해 자기의 필요한 재능과 소명을 합력하여 쓰는 자들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

집사회의 조직

- 5.10 특별한 회중인 집사들은 집사회라는 하나의 부서로 조직이 되는데, 이때 목사와 부목사는 집사회의 자문 회원이 되고, 회중의 회계 담당자는 집사회의 회원이 아닐 경우 자문 회원이 된다.
집사회는 회원들 중에서 회장과 서기를 뽑는다. 서기는 집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즉시 당회에 제출해야 한다.
- 5.11 회중의 정기적인 헌금을 관리하는 회중들의 회계 담당자는 집사회의 감사를 받는다. 집사회의 의사록에는 회중 회계 담당자의 매월 재정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회 재정의 철저한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인사를 청해 재무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감사 비용은 교회 자금에서 지출되며, 당회의 기록에 남기고, 그것을 보기 원하는 회원은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다. 그러한 감사는 적어도 3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정치 형태

집사회의 절차

- 5.12 집사회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적어도 1년 9 회 이상의 모임을)를 갖는다.
- 5.13 회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언제든지 집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2인 이상의 집사나 당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러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교회의 담임 목사뿐 아니라 집사회의 전체 회원에게 적당한 방법을 통해 알린다.
- 5.14 각 회중의 집사회는 의결 정족수에 필요한 회원수를 정하되, 그것이 정식 모임의 1/2 이하나 소집된 회의의 1/4 이하여서 안 된다.
- 5.15 투표권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5.16 모든 집사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당회와의 관계

- 5.17 의무 수행에 있어 집사회는 당회의 감독과 권한 아래 있는 기구이다. 회중의 예산과 그 밖의 중요한 재정의 결정은 회중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당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5.18 당회는 집사회의 모든 의결 사항에 대해 그것을 무효로 하고, 수정하거나 보다 신중한 고려를 위해 반려할 수 있다.
- 5.19 집사회와 당회는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연 1 회에 한해 연합 모임을 가질 수 있다.
- 5.20 연합모임은 공식적인 사안을 다루어서는 안되며, 당회와 집사회는 각자 별도로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다.
- 5.21 회중들에게 집사를 세우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 보아도 비합리적일 때는 그것을 장로들에게 위임한다.

제 6 장 장로와 당회

장로에 대한 설명과 장로의 자격

- 6.1 장로의 직분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평범한 향존직이다. 구약과 신약 교회에서 모두 하나님께서는 안수를 통해 장로를 세우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징계하셨다.
- 6.2 장로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으며 믿음이 견고하고, 삶이 경건한 남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를 뽑아야 한다.³³
- 6.3 장로는 회중들 가운데 흠이 없고,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의무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자여야 한다.
- 6.4 장로의 의무는 개인적이거나 합심으로 회중의 영적 복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치리장로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회중의 대표자지만, 모든 교회 법정의 판결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당회의 목적

- 6.5 교회의 최하위 법정인 당회에는 노회 관할 아래 개별 회중에 대한 영적 감독권과 통치권이 부여된다.

당회의 권위와 임무

- 6.6 당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회중을 영적으로 보살피는 것이다.

33 딤후전 3:1-7; 딤후 1:6-9.

- 6.7 당회는 회중으로 하여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뿐만 아니라 노회와 총회 그리고 모든 세계에서 말씀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편성하며 실천해야 한다. 당회는 회중들의 전반적인 일을 수립하고, 감독하기 위해 회중들로 구성된 부서나 위원 혹은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치 형태

6.8 당회는 보다 상위 법정의 관할하에 임무를 실천하기

위해:

- A.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원들, 특히 병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슬픔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방황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인도하며, 그 밖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덜어주므로 보살펴야 한다.
- B. 회중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기독교적인 지식과 행동을 알아본다.
- C. 권징조례에 따라 회중 가운데 과실이 발견된 회원은 권고하고, 견책하거나 직분을 정직하고 주의 만찬의 성례전에서 배제시킨다.
- D. 성찬 배수자 회원인 부모들에게 세례식 때 그들의 그들의 자녀를 강단 앞으로 대동하고 나갈 것을 권한다.
- E.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재확인 또는 회원 이동의 청구가 있을 때 지원자의 성찬 배수자 교회 회원을 허입한다.
- F. 무효한 상태에 있는 회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회원의 이동에 대해 합당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 G. 회중이 선출한 장로와 집사를 가르치고, 검증하며 안수하여 임명한다.
- H. 회중 가운데 중직자들에게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을 권한다.
- I. 집사들의 일을 감독하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감사한다.
- J. 회중의 종교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감독한다.
- K. 비안수직의 교회 직원을 채용하고, 감독한다.
- L. 공예배 규칙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시간과 장소, 성례전의 집행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종교적 예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정치 형태

- M. 담임 목사의 부재시 회중을 예배에 모이게 한다.
- N. 특별 헌금을 관리하고, 수령하며 균형 있게 사용할 것을 지시한다.
- O. 회중과 교회의 영적 발전을 위해 합당한 방법을 연구하고, 권한다.
- P. 상위 법정의 적법한 명령을 준수하고, 행한다.
- Q. 장로 중에서 노회와 총회에 교회를 대신할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러한 대표자들에게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투표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예외적인 것은 교회 통합 계획과 관련된 제안으로, 그 문제에 대해 당회는 대표자들에게 선택할 경우 어떻게 투표해야 할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대표자들은 당회에 해당 기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 R. 노회에 교회 전체의 공통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제안한다.
- S.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그룹을 임의로 구성하고 감사하거나 지시하고, 해체시키므로 공식적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T.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 U. 교회 건물과 부속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6.9 당회는:

- A. 업무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록물을 보관하고, 감사와 보고를 위해 기록물을 매년 노회에 제출한다.
- B. 아래와 같은 것들에 대해 정확한 기록물을 보관한다:
 - (1) 정치 형태에 따라 회중의 명부를 기록한다.
 - (2) 세례 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다.
 - (3) 회중들 가운데 사망한 자와 결혼한 자들의 명부를 작성한다.

정치 형태

- C. 요구가 있을 시 교회의 상위 법정과 소속 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보고한다.

당회의 조직

- 6.10 목사는 직책상 당회장이 된다. 부목사가 있을 경우 그 역시 당회원이 된다.
- 6.11 개척 교회의 목사는 직책상 임시당회의 회장이 된다.
- 6.12 당회의 종직들은 당회장 외에 당회의 필요에 따라 매년 부회장이나 서기로 선출될 수 있다.
- 6.13 목사가 어떠한 이유로 사회를 볼 수 없을 때는 부당회장이 사회를 맡는다.
- 6.14 교회에 목사가 없는 경우, 노회가 정한 ARPC의 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그러한 당회장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부당회장이 사회를 본다.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당회장은 노회의 의해 피지정인이 된다.
- 6.15 노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한 차례 정기 모임(모임이 1년 9회 이하가 되지 않도록)을 갖는다. 당회장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나 2인 이상의 치리 장로나 노회의 요구가 있을 시언제든 당회를 소집해야 한다. 당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적당한 방법을 통해 그것을 공지해야 한다:
- 6.16 당회를 개최할 때는 담임 목사에게 알려야 한다.
- 6.17 당회 때마다 의결 정족수에 필요한 회원수를 정하되 목사 1인과 장로 1인 또는 목사가 없이 장로 2인만으로는 성회가 불가능하다.
- 6.18 회의에 직접 참석한 회원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6.19 당회는 모임 때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한다.

정치 형태

제 7 장 안수 행위

- 7.1 안수는 ARPC 에 속한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회중이나 또는 ARPC 의 기구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들을 교회의 특별한 직분에 공식적으로 임직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없는 안수 행위는 전혀 무가치하다.
- 7.2 장로교의 제도에 있어 안수는 일반적으로 양손을 얹는 것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비록 그것이 안수 행위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ARPC 의 유익하고, 전통적인 상징이다. 이러한 행위는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한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안수에는 위원들이 피안수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중보 기도가 따른다. 이러한 안수식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것들은 공예배의 규칙서에 나와 있다.³⁴
- 7.3 안수 행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ARPC 혹은 이것에 속한 기관의 회원들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 복음증거 사역의 보호 차원에서 안수위원회에서 사전 승인한다.
- 7.4 안수 행위는 단회로 영구하며, 안수 당사자의 징계나 사망으로 ARPC 재판국의 정직이나 면직이 있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³⁴ 공예배 규칙서, 제 7 장 5.C.7.

- 7.5 안수 행위는 피안수자에게 직위에 있어다른 교인들보다 우월하거나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명과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암시하는 것이다.
- 7.6 회중이나 교회 법정 혹은 ARPC 소속의 대행 기관은 (선교사역과 같은) 안수를 요구하지 않는 ARPC 를 위한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회원들을 세우고, 임명하는 권한이 있다. 이때 회중들 앞에서 임명식을

정치 형태

거행한다. 기도할 때 양손을 엮는 행위는 의식의 일부일 뿐 안수가 이전되거나 전가되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 의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들은 4 공예배 규칙서에 나와 있다.³⁵

³⁵ 공예배 규칙서, 제 5 장.C.8.

제 8 장 장로들과 집사들의 선출과 안수 및 임직

피선거 자격

- 8.1 장로 혹은 집사직에 선출되는 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자격이 요구된다:
- A. 자기의 직분을 행해야 할 회중들과 항상 회원으로서 충실하고,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회원;
 - B. 현재 징벌 상태에 있거나 징벌이 심의 중에 있지 않은 자;
 - C. 이러한 직분들을 맡을 수 있는 최저 연령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 D. 개종한지 오래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급하게 직분을 맡기지 않도록 심사숙고한다.³⁶

정치 형태

- E.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에 부르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사람을 지명해서는 안 된다.(2.11)
- 8.2 교회는 단지 당회나 집사직분이란 특별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 무자격한 직분자를 뽑지 않도록 해야 한다.
- 8.3 당회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에게 합당한 훈련을 실시할 책임을 갖는다.

직분의 임기

- 8.4 장로와 집사의 선출과 안수는 징계로 인해 면직되지

³⁶딤편 3:6

- 않는 한 평생 동안 유지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회중은 장로나 집사를 지속적으로 헌신적인 섬김을 행하거나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봉사하도록 선출한다.
- 8.5 당회나 집사직의 활동 기간이 평생인 회중에게는 장로나 집사, 또는 장로와 집사를 각자 그들의 직분에서 정해진 임기 동안 열심히 봉사하도록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순환 제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되는 한 공동의회에서 채택될 수 있다:
 - A. 회중은 장로나 집사직의 임기를 3년 미만인 되어서는 안된다.
 - B. 장로와 집사에게는 자기의 직분에 대한 임기가 끝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동일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C. 순환제도에 따라 은퇴한 장로에게는 집사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 8.6 순환제도를 사용하는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만 비순환 제도로 돌아갈 수 있다.
 - 8.7 한가지의 제도에서 다른 제도로의 변화는 모두 노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8.8 그동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온 장로나 집사가 나이나 신체적 무능력, 그 밖의 다른 정당한 이유로 인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섬길 수 없게 될 때는 명예 장로나 명예 집사로 추대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선거는 전직 직분자가 명

정치 형태

예로운 직분으로 받겠다는 조건 하에 (장로의 경우) APC 법정에서 파견나온 대표자에게 투표권이나 참관인의 자격을 줄 것을 배제한 가운데 회중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투표 절차

- 8.9 장로와 집사의 수는 회중에 의해 결정된다. 회중은 그들의 삶에 대한 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로와 집사의 수를 정해야 한다. 장로의 수가 집사의 수와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다. 회중은 회원 규모의 변화에 따라 직분자 수의증감을 고려해야 한다.
- 8.10 장로와 집사의 선출은 정식으로 소집된 공동의회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 8.11 지명 절차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추천, 검증, 선거. 추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회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검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중 역시 추천받은 자와 선거 과정을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지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 A. 지명위원회. 선교교회의 경우, 당회나 노회는 적어도 선거 14 일 전까지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당회는 그 자체가 지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들은 당회로부터 검증받아야 할 지명된 사람들의 명단을 준비한다. 지명위원회의 대표에는 APC의 활동적인 장로 가운데 최소한 1 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B. 위원회는 회중에게 피지명자에 대한 제안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기들이 받은 명단의 일부나 전체를 밝혀서는 안되지만, 모든 피지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에는 회중의 제안이 없어도 피지명자를 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피지명인을 찾는 공동의회에서 피지명인에 대한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 C. 피지명인에 대한 검증 당회나 노회는 선거에 앞서 피지명인을 회중들에게 소개하기 전에 그들의 신앙과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과 의지에 대해 개별

정치 형태

적인 면담을 가져야 한다. 직분에 대한 모든 피지명인들에게 "안수와 임직을 위한 고백"의 질문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당회는 피지명자에게 그들이 기준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것이나 동의를 망설이는 것이 있는지와 그러한 것들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혹은 피지명자가 선거에 출마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본다.

- 8.12 투표종직자를 뽑기 위한 공동의회는 피지명자들이 8.11. A-C에서 시작한 지명 절차를 마친 후 실시하되, 모든 추천 과정이 완수되고 적어도 1 주일이 지나 실시해야 한다. 직분에 지명된 자가 한 사람일 때는 피지명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구두 방법이나 거수, 기립,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한 가지 직분에 지명된 자가 한 사람 이상일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회중은 직분자의 선거에 다수결 방식과 과반수 득표 방식 중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 경우, 과반수 득표 방식으로 한다.
- A. 과반수 득표 방식이 요구되나 한번의 투표로 결정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투표부터는 투표 용지에 선출할 사람의 2 배수의 후보자 이름을 기입한다.
- B. 다수결 득표 방식이 필요할 때는 피지명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자가 선출된다. 만약에 당선자가 사양하거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차점을 얻은 피지명자가 대체되어 정식 당선자로 간주된다.
- 8.13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할 경우, 당회는 알맞은 투표 용지를 준비하여 회중 가운데 투표 용지를 배분하고, 수거할 최소한 3 인 이상의 활동적인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든다. 위원회는 투표용지를 계수한 후 득표수는 보고하지 않은 채 당선자들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발표한다. 그런 다음 투표용지를 폐기 처분한다.
- 8.14 당회는 필요한 경우 그들에 대한 안수와 임직 날짜를 정한다. 이 날짜는 선거 직후 회중에게 공포해야 한다.

안수와 임직

정치 형태

- 8.15 장로와 집사들에 대한 안수 및 임직식의 사회는 담임목사가 맡는다. 교회에 담임목사의 부재시, 당회는 노회에서 지정한 당회장이나 ARPC 소속의 목사, 혹은 노회가 승인한 ARPC의 비회원 목사를 초청해 사회를 맡겨야 한다.
- 8.16 안수식과 임직식 때, 당선된 직분자들은 회중 앞에서 부가적인 신앙 고백에 따라 ARPC의 교리와 정치, 권징 그리고 예배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해야 한다.
- 8.17 안수와 임직식을 위한 신앙고백
- (1) 그대는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자와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고백하고, 그분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모든 것보다 높으신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 (2) 그대는 성경, 즉 신구약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를 위해 유일하게 완전한 규범이 되고, 우리를 가르치기에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으며 원본의 일점일획도 틀린 것이 없어 언제, 어떠한 이유로도 그것에 가감할 것이 없다고 믿는 자신의 신앙을 재확인하는가?
 - (3) 그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서에 있는 본 교회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과 자신의 신앙고백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믿을 것을 약속하는가?
 - (4) 그대는 연합개혁장로교회의 정치와 권징 그리고 예배 의식을 받아들이는가?
 - (5) 그대는 본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장로직(집사직)을 수락하고, 직분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행할 것을 약속하며, 교회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가?
 - (6) 그대는 사랑의 정신 안에서 당회와 교회의 상위 법령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는가?
 - (7) 그대는 모든 것에서 교회의 단결과 화평, 순결 그리고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가?
- 8.18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확인 답변이 끝나면, 사회자는 회중을 향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정치 형태

- "이 자리에 모인 회중 여러분들께서는 이 동료 회원들을 장로(집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본 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랑 안에서 그들의 직분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격려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가?
- 8.19 회중들이 기립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찬성하는 답변을 표할 때, 선출된 직분자들은 무릎 꿇고 당회원들이 손을 얹고 안수하므로 자기의 직분을 위해 성별된 자가 된다.
- 8.20 안수기도에 이어 담임목사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나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마땅히 안수를 통해 장로(집사)란 성스러운 직분에 임직되었음을 공포하노라."

당회원들은 새로운 임직자들과 손을 맞잡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는 임직자와 회중 모두에게 그들 상호 간의 관계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권면한다.

재임직

- 8.21 순환제도에 따라 재선출된 장로나 집사는 재안수 절차가 없이 똑같은 직분에 다시 임직된다.
- 8.22 회원 자격이 한 ARPC 회중에서 다른 회중으로 이동되어 동일한 직분에 선출된 장로나 집사는 재안수 절차 없이 임직되지만, 그들은 당회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과 처음 안수받은 이후 본 교회의 기준에 대한 자기의 견해가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를 밝혀야 한다.
- 8.23 재임명되는 임직자들에게는 임직 동안 "안수와 임직을 위한 신앙고백서"에 있는 질문 5-7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할 것이 요구되며,

정치 형태

그때서야 사회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임직되었음이 선포된다.

- 8.24 타교단에서 회원권이 이전되어 똑같은 직분에 지명된 장로나 집사에게는 당회로부터의 개인 면접과 임직식 때의 두 차례에 걸쳐 "안수와 임직을 위한 신앙고백서"에 있는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이 요구되며, 당선될 경우 재안수 절차 없이 임직된다. 그들 역시 자기들의 이전 교회나 다른 교회 법정으로부터 권징이 심의 중에 있어서는 안 된다.

기록과 보고

- 8.25 안수식과 임직식에 대한 기록물은 당회의 의사록에 보관되며 임직자들의 명단은 노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정치 형태

제9장 목사

목사에 대한 설명과 자격

- 9.1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말씀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자이다. ARPC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인정하셨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한해 이러한 사역에 구별된 자로 세운다.
- 9.2 목회 사역에 대한 소명은 자기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할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을 이러한 사역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것처럼, 그들 역시 이러한 일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증거해야 한다.
- 9.3 목사의 자격은 이러한 사역에 있어 그를 교사와 리더 같은 섬기는 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은사들과 이러한 직분을 끝까지 명예롭게 행하는 인격과 덕망으로 이루어진다.
 - A. 영적 성숙. 목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의 사이에 구원 관계가 확실한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여야 한다.
 - B. 믿음. 목사는 개혁연합장로교회의 교리와 정치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것에 기초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C. 지식. 목사는 성경과 ARPC의 교리, 정치 및 예배와 목회자 의무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증거해야 한다.
 - D. 동정심. 목사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겨야 한다.
 - E. 인격. 목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F. 지성. 목사는 안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G. 교육. 목사는 자기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나 그와 동등한 학위는 물론 노회가 인정하는 정식 인가를 받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치 형태

교육적인 요구 조건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유보될 수 있는데, 그러한 유보를 위해서는 노회원 중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의를 개최하기 전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의 유보 신청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노회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 9.4 성경이 학위의 등급이나 목회자들 사이의 서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목회자는 직책과 권위에 있어 동등하다. 목사와 교사, 장로란 명칭의 사용은 단지 서로 다른 의무와 책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9.5 목사직에는 장로의 직책과 권한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로, 목사를 장로라고도 칭한다.

목사의 의무

9.6 특정한 회중의 목사(혹은 부목사)로서의 목회자

- A. 공적 의무. 목사는 자신의 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성례를 행하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결혼식과 장례식을 집례하고, 회중에 대한 정치와 권징, 예배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 장로와 함께 의무를 행한다. 목사는 회중들 사이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자문회원 역할을 한다. 목사는 또 교회의 상위 법정에서 장로와 함께 의무를 행한다.
- B. 사적 의무. 목사는 교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그들을 심방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며 영적인 면에서 그들을 상담하고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특히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나이 많은 자들을 찾아가며, 필요한 자들에게 조언하고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고백대로 살지 않는 죄를 범하거나 자기의 종교적 의무에 무관심한 자들을 권고하며, 교인들의 영적인 문제를 전방적으로 보살핀다.

9.7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

- A. 목사들 중에는 특별히 가르치는 자로서 남다른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어 신학교나 대학교,

정치 형태

혹은 그 밖의 다른 교육 기관에서 자기가 속한 노회의 승인 하에 목사의 사명을 계속 유지한 채

"노회 밖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 B. 교사로서의 목회자인 목사는 자기가 맡고 있는 교인을 목회적 차원에서 보살피고, 하늘 나라의 사역을 부지런히 행하며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9.8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목사

- A. 목사는 노회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 B. 그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전하며 노회의 감독 아래 특수한 분야에서의 목사의 의무를 행하거나 자기가 섬기는 목사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특별한 복음 전도사역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

9.9 선교사로서의 목사

- A. 교회는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목사를 세워 선교사로 파송해야 한다.
- B. 선교사로 나가는 목회자에게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복음전도자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C. 노회가 미조직된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목회자에게는 총회의 감독 하에 회중을 조직하고, 신학생을 유치하여 공부를 가르쳐 그들을 목회자로 안수하여 임명하는 노회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러한 면에서, 목회자는 그의 다른 모든 사역에서 여전히 교회의 기준에 구속을 받는다.

9.10 교회 개척자로서의 목사

- A. 노회는 목사를 청빙하여 회중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행하도록 청빙할 수 있다.
- B. 교회 개척자의 중요한 과제는 "회중"을 세워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 C. 교회 개척자는 설립 교회 교인들의 목회자로 사역한다.

정치 형태

- D. 교회 개척자는 임시 당회의 회장이 된다.
 - E. 교회 개척자는 조직적인 교회가 세워질 때 새로운 회중들 사이에 유능한 리더십을 갖춘 장로가 나오도록 사람들에게 리더십훈련을 시켜야 한다.
- 9.11 특정한 회중을 위한 자비량 혹은 파트 타임 목사로서의 목회자
- A. 목사는 노회의 허락 하에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자비량 목사로 교회에 청빙될 수 있다.
 - B. 자비량 목사는 노회와의 사전에 조정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책임과 회중에 대한 목회적 의무 사이의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 C. 노회는 자비량 목사나 파트 타임 목사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노회와 목회자는 보험과 은급 혜택의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복지국(Board of Benefits)의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9.12 기관 목사로서의 목회자
- A. 목사는 노회가 인정하는 군대 안에서의 종군 목사나 기관 목사로 사역할 수 있다.
 - B. 기관 목사로 사역하는 목회자는 지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똑같은 열심으로 자신의 말씀 사역에 대한 사명과 성례를 행해야 한다. 기관 목사는 필요에 의해 그가 섬기는 부처나 기관 혹은 조직 외에 자기의 사역을 승인하는 노회의 감독 아래 있다.
 - C. 기관 목사는 노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자기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다른 목회 의무를 행한다.
 - D. 기관목사로 사역하는 목회자는 자기가 섬기는 조직의 기준이 다를 때는 연합개혁장로교회의 기준을 우선시해야 한다.
- 9.13 다른 직책들에 있어서의 목회자
- 교회의 다양한 일로 인해 목회자가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 외의 사역들을 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당연시되고 있다. 이미 안수를 받고 그러한 사역에 종사하기 원하는 목회자가 일반적인 목회 소명의 범위를 벗어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소속된 노회의

정치 형태

승인을 받고, 노회의 "업무 밖에 있는" 사역에 대해 매년 재승인을 받기 위해 노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와 같은 비전통적인 사역들(특히 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책일 경우) 처음부터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회는 소명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공식적인 정기 모임을 통해 2/3 의 찬성표를 얻을 경우 안수를 행한다. 그러한 사역들에 종사하는 목회자는 자기의 임무를 충성스럽고, 부지런히 행하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노회 관리 아래의 학생들

- 9.14 노회 관리 아래 있는 학생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신학생이나 신대원생들로 장차 안수를 받을 사람들이다.
- 9.15 노회 관리 아래의 학생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당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안수받기 전 최소한 1년 동안 노회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
- 9.16 목회자 사역위원회(The Minister and His Work Committee)나 노회의 해당위원회는 후보자를 노회에 부르기 전에 먼저 그를 검증해야 한다.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 A.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 관계
 - B.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
 - C.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사역을 위해 소명받았다는 확신
- 9.17 노회는 학생에 대한 수용이 결정되면 그를 등록시키고 그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 A. 노회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 학생의 학업 상태와 가정 생활, 경제 문제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해 확인한다.
 - B. 학생에게는 노회의 모든 업무 상황에 대해 알려 준다.
 - C. 학생의 안수를 위한 절차를 돕는다.
- 9.18 학생은:

정치 형태

- A. 노회와 총회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 B. 노회원들 앞에서 지시에 따라 시험 설교를 해야 한다.
 - C. 노회의 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것이나 자기의 신상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노회와 상의해야 한다.
 - D. 노회는 학생에게 노회의 감독 하에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9.19 노회는 학생의 요구와 상관 없이 그의 이름을 노회의 관리 하에 있는 학생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후보자가 5년 동안 노회의 관리 아래 있을 후에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그의 이름이 명단에서 자동삭제된다. 노회의 위원회는 후보자가 그 동안 준비하면서 보여준 훌륭한 신앙의 관점에서 그의 요구를 평가해야 한다. 위원회는 노회에 조처를 건의해야 한다.
- 9.20 후보자에게는 노회의 관리 아래 노회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변하므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1)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신의 기독교적 신앙고백과 일치된 인격을 간직하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준비할 것을 약속하는가?
 - (2) 그대는 말씀 사역을 위한 준비에 있어 노회의 감독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는가?
- 9.21 이러한 질문들에 "예"로 답할 경우,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은 후보자에게 간단히 격려의 말을 한 후 기도로 모임을 마친다.
- 인증 절차**
- 9.22 복음사역을 위한 직분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로 하여금 장차 그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게 될 사람의 자격을 검증하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 사역을 위해 안수받을 자들에 대해 시험하는

정치 형태

- 것이 성경과 일치하고, 교회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회는 사역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로부터의 긍정적인 보고를 받은 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비 목회자의 자격을 인증하고, 목회사역을 위해 안수를 행한다.
- 9.23 3년 동안에 걸친 신학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인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신학생에게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노회의 승인 하에 설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 9.24 모든 인증 후보자는 신학교 졸업장과 관 없이 노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위한 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 인증 전 즉석 행하는 공개 설교
 - B. 시험 후, 노회는 설교에 대해 계속 검토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한다.
 - C. 후보자에 대한 시험에 노회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의 승인을 거부할 수 밖에 없을 때는, 그것들을 그에게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다시 지적하거나 노회의 입장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습을 재이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D. 그에 대한 시험 결과, 사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 결여된다고 판단될 경우, 노회는 그에게 다른 방면의 소명을 찾아볼 것을 정중히 제안해야 한다.
 - E. 후보자의 신앙적인 경건성과 믿음 그리고 ARPC의 특별한 원리에 대한 확신과 관련하여 공개 검증한다.
 - F. 인증 시험이 승인될 경우, 그는 노회의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 항목이 제시하는 의무를 수락해야 한다:
 - (1) 그대는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과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정치 형태

- (2) 그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면에서 가르치기에 완전하며 원본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 (3) 그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서에 있는 연합개혁장로교회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그대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굳게 고수할 것을 결단하는가?
- (4) 그대는 연합개혁장로교회의 정치와 권징,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가?
- (5) 그대는 총회 산하 소속 노회의 권위에 사랑으로 복종하고, 교회의 단결과 평화, 순결 그리고 번영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가?
- (6) 그대는 의와 믿음과 사랑을 따라 자신의 가정 생활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모든 책임을 완수할 것을 진정으로 약속하는가?
- (7) 그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자신의 사역을 수락하고, 그것을 시작하는가?

- G. 이때 노회장은 그가 노회에 의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증되었음을 선포하고, 그에게 앞으로 행하게 될 사역의 중요성과 어려움 그리고 위대성에 대해 간단히 상기시키며 믿음과 열정으로 그 일에 자기를 헌신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 자격이인증된 자의 회원권은 그가 안수받을 때까지 지교회의 회중들 사이에 유효하다.
- H. 인증자에게는 노회장과 노회의 정식 서기가 서명한 자격 인증서가 교부된다.

정치 형태

- I. 그러한 인 증은 서면에 의한 인 증자의 연 장 신청과 그 러한 연 장을 위한 목 회 사역 위원 회의 노 회 승 인 추천이 있 지 않는 한 2 년 동 안 유효 하다.
- J. 동 일한 소 명을 받 은 인 증 자 들은 각 자 자 기 들 노 회 의 감 독 하 에 사 역 해 야 한 다. 노 회 는 그 들 에 게 사 역 분 야 를 말 길 때 가 능한 한 그 들 의 상 황 과 실 태 를 파 악 하 되, 사 역 자 개 인 의 욕 구 보 다 교 회 의 유 익 이 더 고 려 되 야 한 다 는 것 을 항 상 염 두 에 두 어 야 한 다.
- K. 그 들 은 각 자 자 기 들 의 노 회 와 총 회 에 참 석 하 여 상 의 하 고, 조 언 을 듣 되 자 기 들 의 특 별 한 사 역 과 직 분 에 관 련 된 문 제 들 에 대 해 항 상 상 의 하 야 한 다.
- L. 목 회 자 가 아 닌 인 증 자 는 성 례 를 행 하 거 나, 축 도, 결 혼 예 식 의 주 례 와 직 분 자 들 에 대 한 안 수 그 리 고 교 회 법 정 으 서 의 장 이 나 참 관 인 으 로 행 동 할 수 가 없 다.

안수 절차

- 9.25 후보자가 자기가 속한 총회와 노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마치면, 노회는 그를 위한 안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안수를 위해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준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 A. 후보자 개인의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체험에 대한 검토와 검증.
 - B. 그의 영어 성경에 대한 지식의 검증.
 - C. 그의 신학적 지식과 교리적 입장에 대한 검증.
 - D.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지식과 연합개혁신장로교회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 지식 그리고 ARPC의 정치 형태와 권징, 예배 관에 대한 검증.
 - E. 노회원들 앞에서 행하는 원고 설교와 그것에 대한 노회의 건설적 비판의 수용. 이때 노회는 설교에 대한 성경 본문을 지정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 F. 지교회의 청빙인지 노회가 승인하는 다른 목회 사역에 대한 청빙인지의 여부.

정치 형태

- 9.26 노회는 안수를 위한 검증에 있어 통일성을 추구하며 이와 같은 안수 조건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노회는 전노회원들 앞에서 구두 시험을 치르기 전에 위원회에서 다양한 문항의 필기시험에 이어 구두 시험이란 2 가지를 모두 실시하게 하는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 9.27 만약에 노회원 가운데 1/4 내지는 그 이상의 소수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회는 노회자체적으로 제시하는 보다 많은 문항의 질문에 대한 필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질문과 답변은 노회의 공식적인 기록물에 포함된다.
- 9.28 노회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승인하므로 후보자의 소명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면, 노회는 후보자의 안수식을 위한 때와 장소를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수식은 후보자가 목사로 사역하게 될 교회에서 노회가 소집된 가운데 거행된다.
- 9.29 지정된 날 노회가 소집되면 목사는 안수식과 관련된 설교를 한다. 안수식의 준비를 위해 노회와 후보자가 노력한 것들에 대해 사회자가 경과 보고를 한다. 사회자는 안수식의 본질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중들에게 안수식이 갖는 준엄성을 주지시킨다.
- 9.30 사회자는 후보자에게 안수식을 위한 다음과 같은 형식의 질문을 한다:
- (1) 그대는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자와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당신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 (2) 그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면에서 가르치기에 완전하며 원본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 (3) 그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서에 있는 연합개혁장로교회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고백

정치 형태

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믿을 것을 약속하는가?

- (4) 그대는 연합개혁장로교회의 정치와 권징,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가?
- (5) 그대는 총회 산하 소속 노회의 권위에 사랑으로 복종하고, 교회의 단결과 평화, 순결 그리고 번영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가?
- (6) 그대는 의와 믿음과 사랑을 따라 자신의 가정 생활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모든 책임을 완수할 것을 진정으로 약속하는가?
- (7) 그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자신의 사역을 수락하고, 그것을 시작하는가?
- (8) 그대는 복음을 순수하고, 사실 그대로 전하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직분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열정을 갖고 성실히 행할 것을 약속하는가?

- 9.31 후보자가 이러한 질문들에 "예"로 대답하고 무릎을 꿇으면 노회원들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한다.
- 9.32 안수 기도가 끝나면, 노회원들은 그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 9.33 안수식이 목사 취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자는 후보자가 앞으로 시작할 사역을 위해 구별되어 세워졌음을 선포하므로 그 일의 중요성과 어려움과 위대성을 강조한다.
- 9.34 새로 안수받은 목사에게는 노회장과 노회 서기의 이름이 서명된 안수증서가 교부된다.
- 9.35 안수식에 대한 모든 보고 내용이 노회 의사록에 기록되고, 복사본이 그가 전에 회원으로 있던 교회에 발송되면서 그의 이름이 회원 명부에서 삭제된다.

취임 절차

- 9.36 목회자는 자기가 목사로 부임하게 될 교회에 대해 사법권을 갖고 있는 노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되 그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그의 약속된 청빙 절차가 노회에 의해 진행된다.
- 9.37 노회나 혹은 노회 소속의 위원회가 그의 취임식을 주관한다. 취임식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가 노회에 보고되고, 노회 의사록에 기록된다.
- 9.38 목사는 교인이 한 두 사람 밖에 없는 교회의 목사나 부목사로 취임할 수가 있다. 취임식 절차는 청빙의 특성에 의한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 9.39 취임식이 그의 안수식과 동시에 거행될 경우, 목사로 임명된 자는 안수를 위한 모든 질문 문항에 "예"로 답한 후 또 다시 취임식을 위한 질문에도 "예"로 답해야 한다.
- 9.40 목회자로 임명된 자가 이미 안수를 받았을 때는 안수식을 위한 모든 질문 문항에 "예"로 대답하므로 목사안수 서약을 재확인하고, 계속하여 취임식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도 "예"로 답해야 한다.
- (1) 그대는 회중에 대한 목사로서의 자신의 직책을 수용하고, 이 직분에 대한 모든 의무를 공적이고 사적인 면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행할 것을 약속하는가?
 - (2) 그대는 최후에 자신에 대해 해명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는가?
- 9.41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주어지면, 이번을 회중을 향해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회중 여러분은 [이름 삽입]이(가) 여러분의 목사가 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청빙서에 약속한 대로 사랑 안에서 그를 존경하고, 격려하며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사역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까?”

정치 형태

9.42 회중이 자리에서 기립하므로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내면,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발표해야 한다:

"나는 위대한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삽입]이(가) (안수)와 (취임식)을 통해 정식으로 이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 9.43 이때 노회가 지명했거나 초청한 인사들은 목사와 회중에게 그들이 각자 이제 막 시작한 엄숙한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자기들의 견해를 말할 수 있다. 축도가 끝나면, 회중 가운데 일부가 앞으로 나가 그에게 친절의 표시로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자기들의 목회자로 수락했음을 나타낸다.
- 9.44 다른 승인된 사역들에 있어서의 목회자 취임식 역시 목사 취임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 9.45 노회는 목회자의 취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 목회자에게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통보해야 하며, 목회자 자신과 그를 청빙한 교회에는 노회의 결정에 대해 총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교회의 청빙 절차

- 9.46 정식으로 안수받지 않았거나 노회의 검증을 받지 않고 안수에 대한 인증이 없이는 아무도 지교회의 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
- 9.47 사역자와 회중 사이에는 목사나 부목사, 임시목사 혹은 평신도 사역자의 관계가 있다. 노회가 신학생이나 평신도를 평신도 사역자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중 하나가 청빙 사역자가 된다.
- 9.48 부목사의 청빙 절차 역시 담임목사의 청빙 절차와 동일하다.
- 9.49 교회는 아래에 설명한 방법에 따라 담임목사나 부목사를 세울 수 있다.
- 9.50 목회자와 회중 사이의 관계는 취임을 통해 성립되며, 그러한 관계는 노회의 조처에 의해서만 해지될 수 있다.

정치 형태

- 9.51 부목사의 청빙 조건에는 그가 회중을 위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의 사역은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휘를 받는다. 담임목사와의 관계가 해지될 때, 회중과 노회는 부목사와의 관계를 신중히 재검토할 수 있다.
- 9.52 당회는 교회를 위해 담임목사의 역할을 행할 임시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 A. 임시목사와의 관계는 노회가 그의 개인적인 능력과 그 외에 다른 모든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한 후 노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B. 임시목사의 임기는 12 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갱신이 가능하다.
 - C. 회중은 일체의 공식적인 청빙을 제안할 수가 없다.
- 9.53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거나 담임목사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동안 사역을 행하기 위해 당회에서 채용한 신학생이나 평신도이다.
- A. 당회는 긴급한 상황 시 노회나 담임목사의 승인 없이 아무나 평신도 사역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B. 노회는 목회자와 신학생 그리고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탁월한 능력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평신도를 포함하여 긴급한 사역시 평신도 사역자로 가능한 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9.54 목사나 부목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청빙한다:
- A. 당회는 목회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위원 가운데 최소한 절반은 당회원이거나 최근 당회에서 교체된 장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외의 나머지 위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지혜를 보여주고 ARPC의 실체와 정체에 익숙한 자들로 뽑아야 한다.
 - B. 목회자 청빙위원회의 보고할 준비가 되면, 위원회는 승인이나 거부를 위해 추천자의 이름을 당회에 제출해야 한다. 당회가 후보자를 승인할 경우, 당회는 후보자의 임명과 그의 청빙에 대한 승인을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공동의회는

정치 형태

노회가 지명한 당회장, 목회자의 청빙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말는다.

- C. 만장일치나 그것에 가까운 찬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소수가 추천자에 대한 거부를 고집할 경우, 회중에게 투표 결과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청빙과 관련된 투표에 대한 모든 기록을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 D. 만약에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 다수로 승인이 부결될 경우 본 회의에서 타후보자를 고려해서는 안되며, 목회자 청빙위원회는 추후 다른 후보자에 대해 상의하기 위한 모임을 재소집해야 한다.
- E.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승인이 결정되면, 장로와 집사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투표자 회원들의 순서로 청빙에서 명해야 한다.
- F. 서명을 마친 청빙건은 당회장의 재가로 확증된다.
- G. 서명을 마친 청빙서류는 노회의 승인을 위해 노회로 보낸다. 모든 청빙은 노회의 요구 조건에 최종 통과하고, 노회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유보된다.
- H. 청빙 내용에는

- (1) 사례비와 그 밖의 다른 급여의 총액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2) 목회자의 사택과 휴가, 이사 비용, 의료 및 입원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ARPC의 은급 제도(미국 교회에 대한)나 총회에 의해 승인된 지침(새로운 임지나 목회자를 부양할 수 없는 교회를 제외하고)에 따라 노회가 승인한 지역적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은급 제도(미국 밖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의 지원을 위한 교회의 총회 기부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당회에 의해 매년 청빙 조건이 재검토될 것을 명시한다.
- (5) 승인 전 노회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6) 노회는 담임목사 후보자에게 회중이 제안한 청빙건을 제시해야 한다.

[ARPC의 은급 제도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해 1년 동안 청빙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복지위원회는 목회자와 당회 서기, 노회 서

정치 형태

기 그리고 노회의 목회사역위원회에 목회자에 대한 청빙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1년 내의 기간 동안 청빙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은급 제도의 규정상 청빙이 종료된다.

- I. 다른 노회 소속의 목사를 청빙할 경우, 선임된 목사는 부임하게 될 교회가 속한 노회에
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J. 선임된 목사가 청빙을 수락하면, 노회는 취임식의 거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 K. 노회는 ARPC의 최대 유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면에서 조건을 갖추었을지라도 청빙서의 제시를 유보할 수 있다.
- L. 개척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가 전에 자기를 청빙한 교인들이 청빙에 위한 모임을 갖기 전에 이미 청빙을 받고, 노회나 노회의 목회사역위원회가 그의 이러한 청빙과 청빙 조건을 승인할 경우, 교회가 조직적인 교회로 성장하면 ARPC의 취임할 수 있다.
- M. 다른 사역들을 위한 청빙 절차 역시 담임목사의 청빙 절차와 비슷하다.
- N. 연간 재검토에 따라 청빙 조건에 변화가 발생시 새해 첫 번째 정기 모임 때 그것을 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회 관계의 해지 절차

- 9.55 노회는 목회 관계의 해지를 조처할 있다. 그러한 조처는 목사나 당회, 회중 노회에 의해 제안될 수 있다.
- 9.56 목사가 자기의 목회 관계의 해지를 원할 때는:
 - A. 자신의 뜻을 서면으로 당회에 알리고, 청원서를 노회에 보내야 한다.
 - B. 이때 청원에 대한 조처를 위해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 9.57 당회가 목회 관계의 해지를 원할 때는:
 - A. 서면으로 목사에게 자기들의 뜻을 알리고, 청원서를 노회에 보내야 한다.
 - B. 이때 청원에 대한 조처를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회중들에게 자기들의 뜻을 알린다.

정치 형태

- 9.58 회중이 목회 관계의 해지를 원할 때는:
- A. 성찬 배수자 회원들은 서면을 통해 당회에 목회 관계의 해지를 원하는 자기들의 뜻에 대한 조치를 위해 공동의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 B. 당회는 요구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 C.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회는 요구에 대한 조치를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 D. 당회는 서면을 통해 목사와 노회에 목회 관계의 해지를 원하는 뜻을 알린다.
- 9.59 회중이 목회 관계의 해지를 위한 조치를 행할 때는:
- A. 회중의 행동을 서면으로 노회에 보고한다.
 - B. 목회 관계의 해지를 원하는 것에 회중이 동의할 경우, 노회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회중과 목회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목회 관계를 해지해야 한다.
 - C. 회중이 목회 관계의 해지를 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

회중은 서면으로 노회에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노회는 그러한 모든 이유와 당회가 원하는 것들에, 그것이 회중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한 후 회중과 목회자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측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9.60 노회가 담임목사와의 관계 해지를 원할 경우, 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고, 회중과 목회자에게 가장 유익하고 혜택이 되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노회는 당사자로부터의 공식적인 신청이 없이 그것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9.61 노회는 담임목사에게 다른 분야의 사역을 권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한 청을 받은 목회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구해야 한다.

목사를 타노회에서 이동시키기 위한 절차

정치 형태

9.62 연합개혁장로교단 내에서의 이동

- A. 노회는 목회자나 신학생을 현재의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한 이동은 담임목사나 무임목사 혹은 신학생이 자기가 속한 노회에 이동을 원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검증과 허입을 위한 승인에 앞서 영입 노회에 신상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므로 시작된다.
- B. 타노회로부터 목회자를 허입하는 노회는 그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 그리고 자신의 직분에 대한 임무를 실천할 수 능력에 대해 검증한다. 검증 후노회는 목회자의 허입을 거절할것인지, 혹은더 준비될 때까지 그의 허입을 유보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회는검증 절차의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
- C. 현재 노회에서 타노회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목사는 그것을 허락하는 노회에서 자기의 무흠한 상태를 암시하는 이전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이전 동의서는 목회관계나 그 밖의 다른 관계의 해지가 완료된 후에만 발급된다. 이전을 원하는 목사는 그가 이전을 진행 중인 노회에 정식으로 허입되고, 그의 허입에 대한 공식 문서가 전출을 허락한 노회에 통보될 때까지는 기존 노회의 회원으로 유지된다.
- D. 노회는 증명서의 발급 날짜와그 밖의 다른 중요한 정보를노회 의사록에 기록해야 한다.

9.63 타교단으로부터의 이동

- A. 타교단 목회자의 이전 절차는 ARPC 안에 있는 노회 사이의 이동 절차를 사실상 그대로 따른다.
- B. 목사는 자기가 속한 노회나 혹은 교단으로부터 이전 승인을 허락하는 증서를 제출해야한다.
- C. 노회의 회원 가입을 신청 중에 있는 목사는 자신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 자격에 대한 능력 그리고 연합개혁장로교회의 교리와 원리에 관한 지식과 소신에 대해 검증받아야 한다.

정치 형태

- 9.64 다른 교단으로부터의 이동을 신청 중에 있는 목사는 ARPC 소속 노회의 관리 하에 훈련받은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9장 9.3.G)
- 9.65 타교단으로의 이동
타교단으로의 목회자에 대한 이동 절차는 ARPC 안에 있는 노회 사이의 이동 절차를 사실상 그대로 따른다.

다른 사역들에 대한 청빙 규정

- 9.66 목회 관계를 포함한 다른 사역들에 대한 청빙 절차는 목사직에 대한 청빙 절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청빙을 제안하는 법정이나 기관은 목회자가 회원으로 있으며 중요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노회에 관련 사역에 대한 청빙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 9.67 목사가 ARPC의 법정이나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아닌 사역을 원할 경우:
- A. 그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B. 노회는 그 사역이 ARPC와 목회자 본인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이 될 때 승인을 허락할 수 있다.
 - C. 승인이 허락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그러한 사역의 수락을 원할 때는 징계 없이 자기의 직책을 사임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D.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노회는 그에게 자신의 안수 서약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사법적인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제 10 장 노회

노회의 목적

- 10.1 노회는 당회 바로 위의 상위 기관으로 총회가 지정한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교회 집단에 대한 감시권을 갖는 ARPC의 법정이다. 교세의 확장에 따라 노회는 다른 지역에 교회와 "예배소", "설교국", "소수 민족을 위한 사역"이나 혹은 "선교 목적의 교회"의 조직을 위해 자기의 지역적인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다. 노회는 노회 내의 전반적인 질서를 집행하는 장로교의 제도에 있어 중요한 법정으로, 노회의 일반적인 원리들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통해서만 조직되는 상위 법정이다. 그 명칭은 헬라어 신약성경에서 유래된 것으로 성경적이다.

노회의 권한과 책임

- 10.2 노회는 그것의 중요한 책임으로 말씀과 실천을 통해 노회와 지교회, 총회 그리고 전세계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의, 계획하고, 조직하며 운영하는 것을 갖는다.
- 10.3 노회는 그것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A. 상위 법정의 법률적 명령을 집행한다.
 - B. 교리나 권징 문제를 포함하여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중재, 상소, 불만을 접수, 청취하여 해결하고, 판결한다.
 - C. 지교회의 당회로부터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판결을 위해 자문하고, 최초의 재판권을 맡는다.
 - D. 당회의 기록물에 대한 검토 후 승인 내지는 견책하고, 수정을 요청하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며 ARPC의 기준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에 힘쓴다.

정치 형태

- E. 교회를 통합하고, 분할하며 조직하고, 영입하며 해체하고, 이전하며 교회의 계약 관계를 해지시킨다.
- F. 해체된 교회 재산을 노회의 재량으로 관리하고, 처분하며 활용한다.
- G. 노회 관할 하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교회의 매입이나 매각, 저당 혹은 임차행위를 승인 또는 반대한다.
- H. 노회 관할 아래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점검하여 문제를 시정, 조언하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대해서는 당회장을 선임하고, 설교와 예배를 지원하므로 특별 관리한다.
- I. 목회 후보생으로 신학생을 받는다.
- J. 목회 후보생을 검증하고, 등록을 허락한다.
- K. 복음을 전할 목사를 안수하여 임직하고, 영입하며, 이전을 허락하여 명단을 삭제하고, 심리하며, 목회자에게 자신의 거룩한 소명을 위해 부지런히 헌신할 것을 명령하고, 비행을 견책한다.
- L. 소명과 소명의 변화를 검증하고, 인증한다.
- M. 목회 관계를 성립시키며, 목회자와 노회 양측의 요구나 혹은 노회 임의로 그것을 해지한다.
- N. 무임목사에게 사역을 명령한다.
- O. 노회 내에서의 선교사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지휘한다.
- P. 선교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만들어 그것을 지휘하고, 노회 내에서 ARPC의 확장을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 Q. ARPC의 교리와 정치에 대한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ARPC의 확장을 위해 총회가 제안한 모든 방법에 대해 고찰한 후 가부를 결정한다.
- R. 총회에 ARPC 전체에 이익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정치 형태

- S. 노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 유익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실천한다.

10.4 노회는:

- A. 모든 활동 상황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매년 그것을 총회에 보내 감사와평가를 받는다.
- B.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함께 노회의 활동 상황을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 (1) 신학생의 접수.
 - (2) 안수식과 취임식 및 목회 관계의 해지.
 - (3) 총회 소속 교회의 설립과 조직, 해산, 통합과분리 및허입과 이동.
 - (4) 장로 안수와 허입.
 - (5) 목사와 장로, 집사의 사망.
 - (6) 노회에 속한 교회와 교인의 등록과 이동, 사망에 대한 연간 통계 보고 및 때로 총회의 발표에 의한 조직적인 회원 및 대략적인 재정 정보.
 - (7) 노회의 사역 상태와 진행 상황.
 - (8) 그 해에 집행된 모든 중요한 사업과 일어난 변화들.
- D.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그러한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노회의 구성과 조직

10.5 본 법정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A. 현재 활동 중이거나 은퇴한 회중의 모든 목사.
- B. 해외선교, 노회, 교단 소속의 기관이나 부서, 혹은 하부 기관에서 전임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와 그러한 전임 사역을 하다가 은퇴한 목회자.
- C. 노회가 승인한 기독교 사역에 종사하는 목회자.
- D. 현재 사역 중이거나 퇴역한 종군 목사.
- E. 그 외에 그들 소속 노회로부터 매년 그들이 받은 목사 안수나 소명에 합당한 사역을 행하고 있다

정치 형태

고 승인받고, 인정받은 목회자들. 매년 그들은 총회에 목회자로서 자신이 9. 13에 따라 자기의 성성한 소명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회가 납득할 만한 보고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 10.6 본 법령의 일원인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자들 중에는 또 각 지교회의 장로 1 인이 포함된다.
- 10.7 성찬 배수자 회원이 300 명 이상인 교회는 2 인의 장로 대표를 파송할 수 있으며, 대표의 수는 이러한 비율로 증가한다. 각 노회의 서기는 총회 서기에게 장로들에 대한 검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0.8 임기를 앞둔 부노회장이 치리 장로 순서가 되려면, 전임 노회장이 치리 장로이었어야 한다.
- 10.9 노회 장로의 회원 자격 임기는 그의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기가 대표하는 교회의 당회로부터 자신의 임명에 대한 신임장의 제출을 통해 그가 정상적으로 선출된 유자격자임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 A. 투표권은 회의에 직접 참석한 노회원들에게만 주어진다.
 - B. 노회는 타노회나 기독교의 타교단에서 무흠한 목회자를 노회의 모임에 자문 회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그러한 회원은 협의하고 조언은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 10.10 노회는 노회장과 부노회장, 서기 그리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을 임원으로 한다. 임원의 선출 방식과 직책의 임기 그리고 임무는 노회가 정한다.
- 10.11 노회는 정기 모임을 1 년에 최소 두 차례 이상 갖는다. 정기 모임은 퇴임하거나 혹은 후임 노회장의 설교로 개최되는데, 이때 노회장이 장로일 때는 노회장이 지명한 노회의 소속 목사가 회의와 관련된 말씀이나 설교를 하며, 모든 순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정치 형태

- A. 정기노회의 의결 정족수는 노회 소속 목사의 1/3 과 소속 노회 교회의 1/3 에서 정식 선출된 장로들로 구성된다. 은퇴목사를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노회가 결정해야 한다.
 - B. 총회 기간 중 노회가 회의장을 떠나고자 할 때는 총회가 휴회에 들어갔을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
- 10.12 정기 회의 사이에 긴급한 주의 필요로 하는 일어날 때는 노회장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노회 서기 또는 최소 두 교회 이상 노회원 3 인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소집 전 최소 1 주일 동안, 회의의 때와 장소 그리고 회의를 소집하는 특별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공고문을 모든 노회원에게 보내야 한다. 소집된 회의에서는 공지 사항에 밝힌 것 외의 다른 안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노회 소집의 회의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2 인의 목사와 최소 두 교회 이상의 교회에서 정식 선출된 장로들로 성원된다.

- 10.13 노회는 지시된 업무의 처리를 위해 총회의 지시가 있을 때 소집해야 한다.

10.14 노회나 노회 소위원회, 업무 대행 기관은

그것이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조직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노회의 헌장의 조항과 세칙은 ARPC 의 정치 형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 A. 노회원이나 노회 소위원회, 업무 대행 기관의 회원은 법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인의 지도자나 관리자와 간부들은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법인의 회원 중에서 뽑는다.
- B. 만약에 노회나 노회 소위원회 또는 업무 대행 기관들 가운데 법인 조직이 아닌 것이 있을 경우, 그들은 자기들의 회원 중에서 개인 수탁자를 뽑을 수 있다.

정치 형태

- C. 법인이나 개인 수탁자와 그들의 후임자는 노회나 노회 소속의 소위원회 혹은 기구에 속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 D. 노회의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러한 재산이 점유되어 있는 노회에 의해 취득되고, 저당권이 행사되고, 관리되며 양도권을 갖는다.
- E. 노회가 해산 또는 더 이상 존치하지 않고, 노회의 재산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산권의 소유자는 그것을 총회나 총회 산하의 승인된 대행 기관에 인도, 이전하고 양도해야 한다. 총회나 총회가 인정하는 대행 기관의 영수증은 그러한 노회 재산권의 소유자에 모든 책임에 대한 충실하고, 완전한 이행의 근거가 된다.

제 11 장 2개척 교회

개척 교회에 대한 정의

- 11.1 개척 교회란 장차 ARPC 소속의 조직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모이는 그리스도인, 자기 자녀들과 함께, 회중 공동체를 말한다. 그것은 회중이 자기들 자체의 당회에 의해 치리되지 않고, 노회가 지정한 임시 당회에 의해 치리된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교회와 구별된다.

개척 교회의 목적

- 11.2 개척 교회는 특정한 지역 내에 있는 믿는 자들의 집단에게 예배와 목회적 돌봄 그리고 교제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당회를 갖춘 조직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것 역시 개척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개척 교회의 형성

- 11.3 교세의 확장에 따라 노회는 다른 지역에 교회나 부속 예배실, 예배당, 소수 민족을 위한 사역 그리고 개척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들의 지역적인 경계를 벗어나야 할 때가 있다.
- 11.4 노회는 조직적인 교회로 성장시킬 의도를 갖고 예배와 교제 그리고 사역을 위해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믿는 자들의 무리에게 개척 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
- 11.5 후원 교회는 별도의 무리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무리는 후원 교회의 당회 관할에 속한다. 후원 교회의 소속 노회는 교회 개척 사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11.6 개척 교회가 조직화되고,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중직자들이 선출될 때까지는 노회가:
- A. 11.5 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경우 후원 교회의 임시 당회로 하여금 당회를 대신하여 이러한 사역을 감독하게 한다.

정치 형태

- B. 지역과 상관 없이 ARPC 에 소속된 인근 교회들의 장로나 ARPC³⁷의 기준에 부합하는 장로들로 구성된 임시 당회를 세운다.
 - C. 안수목사를 세워 노회장직을 행하게 하거나, 또는
 - D. 안수목사를 개척 교회의 목사로 청빙하는 문제를 발의한다. 그러한 청빙은 특정 교회의 청빙 조건과 일치하게 발의되어야 한다.³⁸
개척 교회 사역자는 임시당회의 회장 역할을 한다. 노회는 개척 교회의 사역자를 선정함에 있어 후원 교회의 조언을 고려할 수 있다.
- 11.7 노회나 후원 교회는 개척 교회에 대해 막중한 감독권을 갖는다. 개척 교회가 노회의 관할 하에 있을 때는 그러한 책임이 개척 교회의 성장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노회 소위원회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³⁷ 정치 형태, 6.1 – 6.4.

³⁸ 정치 형태, 9.46 – 9.53.

탐사 작업

- 11.8 노회는 개척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탐사 작업을 해야 한다. 탐사 작업은 1년간 계속할 수 있으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탐사 작업에 대해 노회만이 개척 교회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교인 명부

- 11.9 개척 교회는 교인들 가운데 세례받은 자와 기혼자 그리고 사망한 자들뿐만 성찬 배수자 교인과 비성찬 배수자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인 명부를 만들 수 있으며 교회가 당회를 갖출 만큼 조직적일 때까지 노회나 후원 교회를 대신하여 교인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개척 교회의 재산

- 11.10 개척 교회

정치 형태

- A. 개척 교회의 실질적인 재산권은 그러한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노회에 의해 취득, 저당, 관리되며 양도가 이루어진다.
- B. 노회는 교회의 모든 재산권을 언제 지교회에 양도할 것인지에 대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조직적인 교회가 된 후 2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C. 교회가 다시 개척 상태로 돌아갈 때, 교회는 12개월 안에 모든 재산권을 노회에 양도해야 한다.

개척 교회의 리더십

임시 당회

- 11.11 사역이 과도적이라는 점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한 노회는 임시 당회를 세워야 한다. 임시 당회는:
 - A. 노회를 대신하여 개척 교회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 B. 개척 교회의 성장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노회의 담당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 11.12 노회는 개척 교회를 위해 지역과 상관 없이 연합개혁장로교회 소속의 인근 교회들의 장로나 연합개혁장로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장로들로 임시 당회를 구성한다.
- 11.13 ARPC 소속의 조직적인 교회가 개척 교회를 후원할 때, 후원 교회의 당회는 개척 교회의 사역을 감독하기 위한 임시 당회의 역할을 한다. 후원 교회의 당회는 당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감독할 수 있다.
- 11.14 임시 당회는 당회와 동일한 책임을 갖지만, 그것은 개척 교회가 자체 당회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권한이다.
- 11.15 임시 당회는 2차적인 감독권을 가지며, 노회의 소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갖는다. 임시 당회의 장로들은 개척 교회에 독자적인 정체성과 목표의 개발을 허락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 11.16 개척 교회의 목사는 직책상 임시 당회의 회장이 된다.

정치 형태

책임

- A.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재확인 또는 회원자격의 이전에 따른 성찬 배수자 회원 신청자를 접수한다.
- B. 성찬 배수자 회원인 부모에게 자녀가 세례받을 때 그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갈 것을 권한다.
- C. 청원이 있을 때 무흠한 회원에 대한 이전 확인서를 발급한다.
- D. 권징 조례에 따라 회중 가운데 과실이 발견되는 회원은 권고하고, 견책하거나 직분을 정직하고 주의 만찬 성례전의 참여를 배제시킨다.
- E. 치리 장로가 될 사람과 집사를 교육시키고, 검증한다.
- F. 말씀을 전할 때와 장소를 정하고, 성례와 그 밖의 모든 종교 의식을 집행함에 있어 당회와 상의한다.
- G. 개척 교회로 하여금 노회와 총회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 H. 교회 개척자에게 격려하고, 조언한다. 교회 개척자와 당회 사이에 상호 신뢰관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 개척자는 당회를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와 독려자로 대해야 한다. 교회 개척자는 자신의 염려와 절망적인 것들에 대해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 개척자의 사역과 교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그에게 조언하고, 그와 상의해야 한다.
- I. 당회를 섬기는 모든 장로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사역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 J. 사역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노회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사역을 위해 조정해야 한다.

교회 개척자

- 11.17 노회는 목사를 개척 교회의 사역자로 청빙할 수 있다. 개척 교회의 성장에 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노회 소위원회

정치 형태

는 노회의 승인이나 또는 거부를 위해 청빙 조건과 함께 피추천인의 명단을 노회에 제출하는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1.18 노회는 개척 교회의 사역을 위한 안수목사의 청빙건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러한 청빙은 조직적인 교회의 청빙 조건과 동일하게 발의되어야 한다.

공적 책임

교회 개척자는:

- A. 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 B.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
- C. 말씀을 전한다.
- D.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격려한다.
- E. 성례를 집행한다.
- F.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다.
- G. 결혼식과 장례식을 집행한다.
- H. 교인들에 대한 정치와 권징, 예배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을 장로들과 협력하여 행한다.
- I.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자문 위원 역할을 한다.
- J. 장로들과 함께 교회의 보다 상위 법정에서 역할을 감당한다.

사적 의무

교회 개척자는:

- A. 교인들의 목사로서 그들과 대화하고, 가까이하므로 영적인 면에서 그들을 상담해 주고,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 B. 특별히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 노인을 찾아가야 한다.
- C. 도움이 필요한 자를 조언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정치 형태

- D.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거나 자기의 종교적 의무에 태만한 자들을 권고하며 영적인 면에서 교인들을 전반적으로 보살핀다.

복음전도자

- 11.19 노회는 자발적 혹은 북아메리카 총회전도국(Synod's Board of Outreach North America)의 요청에 따라 목사를 복음전도자로 청빙할 수 있다.
- 11.20 개척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 부흥 또는 복음 전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노회 소위원회는 노회의 승인이나 거부를 받기 위해 청빙 조건과 함께 피추천인의 명단을 노회에 제출하는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 11.21 노회가 노회의 관할 영역 밖에 있는 개척 교회의 부흥을 위해 복음 전도자를 청빙할 때, 전도자는 총회의 승인에 반드시 따르며 개척 교회의 성장에 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노회의 소위원회와 북아메리카 총회전도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사역해야 한다.
- 11.22 노회는 복음전도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에 대해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한 영역과 기간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

책임

노회는 복음전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충성스럽게 심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A. 당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며 성례를 집행한다.
- B. 특별한 경우, 복음전도자에게 자기 교회의 교인을 검증하고, 허입하며 이전을 허락하는 권한을 준다.
- C. 장로와 집사가 될 사람을 훈련시키고, 검증한다.
- D. 장차 노회 관할 영역 내에서의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정치 형태

- E. 노회의 관할 영역 밖에 있는 개척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변의 자기 교회의 영향을 받는 노회들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F. 목사 취임을 하지 않은 채 목회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교회에서 목사직을 행한다.
- G. 노회나 자기를 지휘하는 목사의 감독과 지시 아래 특별한 복음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다.

개척 교회를 조직적인 교회로 성장시킴

- 11.23 조직적인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ONA 지침을 따라야 한다.
- 11.24 개척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취임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인들로부터 목사로 청빙받고, 노회나 노회의 목회자사역위원회가 그의 이러한 청빙과 청빙 조건을 승인할 경우, 교회가 조직적인 교회로 성장할 때 담임목사로 정식 취임할 수 있다.

제 12 장 총회

목적

- 12.1 총회는 ARPC의 최상위 법정으로 총회 소속의 모든 노회를 대표한다. 총회의 공식적인 명칭은 연합개혁장로교회 총회이며 모든 교회와 법정들³⁹ 사이에 통합과 평화와 일치로 통해유대를 강화시킨다.
- 12.2 총회는 ARPC의 전반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감독하기 위해 국과 위원회와 소위원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12.3 총회는 그것의 중요한 책임으로 말씀과 실천을 통해 교회와 노회, 총회 그리고 전세계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조직하고, 실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구성과 조직

- 12.4 총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모임을 갖는다.
- 12.5 본 법정의 회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ARPC에 속한 자들로:
 - A. 현재 사역 중이거나 은퇴한 목회자.
 - B. 해외선교나 노회, 교단 소속의 기관, 국, 혹은 업무 대행기관에서 전임 사역하는 목회자나

³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31 장.

그러한 전임 사역을 하다가 은퇴한 목회자.

- C. 노회가 승인한 기독교 사역에 종사하는 목사.
- D. 현재 사역 중이거나 퇴역한 종군 목사.
- E. 자기의 직분이 자신의 소명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여 총회의 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매년 노회의 투표를 통해 그러한 사역에 대한 임명을 검증받으며, 그러한 목회자들이 매년 그의 사역에 대해 노회에 만족할 만한 가시적인 증거를 제시하므로 자기의 신성한 소명에 9. 13의

정치 형태

교훈에 따라 철저히 헌신하는 목회자로 인정받는 자.

- 12.6 총회장을 역임하고, 지금까지 ARPC의 성찬 배수자 회원으로 있는 모든 장로는 본 법정의 회원이 된다. 부회장은 본 법정의 회원이 된다.
- 12.7 본 법정의 일원으로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자들 중에는 또 최소한 각 지교회의 장로 1인이 포함된다.
- 12.8 성찬 배수자 회원이 300명 이상인 교회는 2인의 장로 대표를 파송할 수 있으며, 대표의 수는 이러한 비율로 증가된다. 각 노회의 서기는 총회 서기에게 장로들에 대한 검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2.9 총회는 이전의 회의에서 정한 때와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 총회장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때, 다른 시간과 장소를 제안할 수 있다. 변경 사항은 총회 개최 최소한 30일 전 각 당회에 고지되어야 한다.
- 12.10 총회는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만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회장이나, 또는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서기가 최소 3개 이상 노회의 정식 요구나 최소 3개 이상 노회의 찬성을 얻어 자발적으로 회의의 소집을 발표할 수 있다.
 - A. 회의의 소집은 최소한 개최 30일 전에 고지되어야 한다.
 - B. 고지서에서는 회의의 목적을 밝혀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사안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 C. 회의 개최 적어도 14일 전 모든 목회자와 당회에 회의의 의제를 배부해야 한다.
 - D. 회의록의 작성과 성회의 인 증은 정식 회의에 대한 규범을 따른다.
- 12.11 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A. 총회장
 - B. 부총회장
 - C. 서기
 - D. 회의록 낭독 서기
 - E. 계수 담당 서기

정치 형태

- F. 보조 서기
 - G. 총회 재무 회계 담당자
 - H. 역사 기록 담당자
 - I. 원만한 업무 처리를 위한 진행 담당자
- 12.12 임원의 선출과 임기, 의무에 대해서는 권한과 의무 총서(*Manual of Authorities and Duties*)에 따라 정해야 한다. 집행부는 각 직책의 임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정한다.
- 12.13 업무 처리는 3 개 또는 그 이상 노회 소속의 총회 목사의 1/4 과 3 개 또는 그 이상의 노회에 속한 지교회 가운데 최소 1/4 개 교회 장로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 12.14 교회의 대표로 참석하는 장로는 당회장과 서기가 서명한 대표 증명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회는 지명자들의 명단을 작성한다. 총회 서기에게 접수하지 않고는 어떤 대표자도 총회에서 발언권이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회의에 직접 참석한 장로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 12.15 지정된 날, 퇴임을 앞둔 총회장의 설교로 회의가 시작되지만, 그가 장로일 때는 회의와 관련된 연설로 회의가 시작되어 차기 총회장에 당선된 자가 나올 때까지 그가 사회를 진행한다. 퇴임하는 총회장이 부재 중이거나 그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퇴임을 앞둔 부총회장이 제시된 임무를 행한다.
- 12.16 모든 총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총회의 업무 처리가 완료되고, 폐회를 위한 투표가 끝나면, 총회장은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나는 연합개혁장로교회가 내게 부여한 권한으로 연합개혁장로교회총회가 다음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에 모이기로 하고 폐회됨을 선포합니다."
총회는 찬송과 총회장의 기도, 폐회 선언과 축도로 마친다.
- 12.17 총회는 회의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여 영구 보관한다.
- 12.18 총회나 총회의 국, 혹은 업무 기관은 총회나 그것들이 역할을 행하는 국가의 법 아래서 법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헌장의 조항과 세칙은 ARPC의 정치 형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총회의 회원이나 총회 소속의 국 혹은 업무 기관은 그러한 법인의 회원이 되며, 법인의 이사나 수탁자와

정치 형태

- 임원은 세칙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12.19 총회나 총회 소속의 국 또는 업무 기관들 가운데 법인 조직이 아닌 것이 있을 때는 회원 중에서 개인 수탁자를 뽑을 수 있다.
- 12.20 법인이나 개인 수탁자와 상속자는:
- A. 총회나 총회 소속의 국 또는 업무 기관에 속한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 B.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총회를 대신하여 총회나 총회 소속의 국 또는 업무 기관을 재산을 매입, 매각, 저당 혹은 임차할 수 있으며,
 - C. 권리 증서를 받아 그것을 보관하고, 지키며,
 - D. 총회의 사업 확장을 위해 위탁된 특별 자금을 관리하고,
 - E. 총회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자금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
- 12.21 총회의 공공 재산에 대한 권리는 총회의 관련 부서나 법인, 업무 기관에 의해 취득, 저당, 임차, 보관 그리고 양도된다.

권한과 책임

- 12.22 총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회의 중에 노회들의 활동, 성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권한중고를 할 수 있다.
- A. 교세의 확장에 따라 노회를 조직하고, 영입하며, 분할하고, 합병하며, 이전시키고, 이동을 허락하며 해체한다.
 - B. 노회의 기록물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과 조언을 준다.
- 12.23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A. 교회의 ARPC 영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ARPC 소속 노회들의 지역적인 경계 내, 외부에 있는 교회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한다.

정치 형태

- (1) ARPC 소속 노회의 허입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청원을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처리한다.
- (2) 집행부는 교회에 허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한 완전한 준비의 지시와 함께기존 노회에 본 교회의 허입, 청원하는 교회가 현재 노회의 지역적인 경계 밖에 위치할 경우 총회측에서 그것을 유보하면서, 을 요청할 수 있다.
- (3) ARPC 소속 노회에 새롭게 가입한 교회는 노회에 활동에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B. ARPC 소속의 기존 노회들의 지역 밖에 있는 교회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한다.

- (1) ARPC 의 허입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청원을 기준에 설명되어 있는대로 처리한다
- (2) 모든 요구 조건이 갖추어지면, 집행부는 ARPC 의 기존 노회에 청원하는 교회에 대한

허입을 고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24 총회는 교단의 행정적인 기능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A. ARPC 를 더욱 강하게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 B. 총회의 사역 안에 운영 규칙과 감독 기구를 만들고, 설치한다.
- C. 총회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채용한다.
- D. 모든 하위 법정과 기관 그리고 특별한 사역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 E. 모든 하위 법정과 기관 그리고 특별한 사역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준을 따르는 방법을 조언하고, 가르친다.
- F. OARPC 의 발전과 더불어 총회 산하의 특별 기구를 조직한다.

정치 형태

- G. 이러한 문제들에 총회와 다른 기관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교회 안의 다른 기관들과 대화한다.
- H.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기관들을 영입한다.
- I. 총회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교회의 평화와 순결과 번영의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언급한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시하며, 교단 전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12.25 총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소원에 귀를 기울인다:

- A. 하위 법정들로부터 총회에 정상적으로 올라온 모든 소원과 청구, 불만 사항들을 접수하고, 그것들에 대해 판결한다.
- B. 기준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하위 법정의 결정을 수정하며, 그것이 일반적이고 교리적인 측면과 일상의 도덕적인 면에서 잘못되었다는, 2 가지 모두 ARPC 에 악영향을 끼치는, 증거를 제시한다.
- C. 교리, 질서 그리고 권징과 관련된 모든 논쟁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한다.
- D. 분열을 일으키는 다툼과 논쟁을 기준에 따라 해결한다.

12.26 총회는 특별한 사역들을 감독한다.

- A. 총회는 그러한 사역들이 하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유익한 것으로 현존의 위원회와 부 그리고 업무 기관들 하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시키고,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 B. 그러한 사역들이 총회의 도움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 단체로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 C. 그러한 사역들이 연합개혁장로교회의 기준 아래 활동하게 한다.
- D. 조직과 활동에 관한 지침은 *권한과 의무서*에 소개되어 있다.

3제 13 장 국과 위원회, 소위원회

국

13.1 목적

국은 ARPC 법정이 ARPC의 사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임무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기구이다.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권한과 의무에 관한 소책자나 그 밖의 다른 법정의 지명에 관한 문서를 통해 설명되고, 출판되었다.

13.2 권한과 책임

- A. 국은 지명 법정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고 부과된 특별한 업무를 행하지만, 법정의 전반적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B. 국에는 일정한 책임 영역 안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여 그것을 행하고, 프로그램과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그것의 특별한 책임 영역 안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 C. 국에는 그것의 특수한 임무를 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적인 독립성의 유지와 직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총회 소속 국의 행정직에 대한 직무 기술서를 권한과 의무 매뉴얼에 기록하기 위해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은 자기의 직무 기술에 기초하여 총회 소속의 국에 보고해야 한다.
- D. 국은 지명 법정에 한해 동안 처리된 모든 사업과 취한 조치 그리고 새롭게 제안되거나 계획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진술서와 함께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권한과 의무에 대한 소책자나 그 밖의 지명 법정에 문서에 나와

정치 형태

있는 것처럼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 E. 지명 법정은 국의 조치에 대해 승인이나 수정 또는 보류할 수가 있다.
- F. 국은 지명 법정이 요청할 경우 검토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빠짐 없이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13.3 구성과 조직

- A. 지명 법정은 국의 회원을 선발하고, 그들의 임기를 정한다.
- B. 국은 자체 직원을 세울 수 있다.
- C. 국은 지명 법정의 승인에 따른 기관과 정관을 가질 수 있다.
- D. 국은 법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의 헌장 내용과 세칙은 반드시 ARPC의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13.4 국의 새롭게 선발된 회원이나 처음 채용된 행정 또는 교육 담당 직원은 복음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과 관련하여 자기의 신앙과 확고한 소신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다.

13.5 국의 직원이 자기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그러한 변화를 자기가 속한 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

13.6 목적

위원회는 지정된 특정한 업무에 대해 검증하고, 고찰하며 결정하도록 ARPC의 법정이 세위원회를 부여하는 기관이다.

13.7 권한과 임무

- A. 재판 사건의 발생시 증언하고, 특별한 사역에 목회자를 취임시키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찾으며 교회의 조직이나 합병을 행하고,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교회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

정치 형태

회의 조치는 지명 법정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수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B. 위원회는 ARPC의 헌법과 법규를 해석하고, 추론하여 지명 법정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것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적용시키는 업무를 위해구성된다.
- C.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ARPC의 법정에 제기된 재판건은 위원회에 회부되어판결을 받는다. 그러한 경우, 지정된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판결을 해야 한다. 재판을 위해 지정된 위원회의 판결을 지명 법정에 항소할 수 있다.
- D. 위원회는 사건의 비밀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13.8 구성과 조직

- A. 각 위원회는 회장과 서기를 뽑을 수 있다.
- B. 위원회는 법정이 지정한 시각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처리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하게 기록하여 그것을 지정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법정의 의사록에 보관되고, 법정의 조치로 간주된다. 그런 다음 위원회를 해체한다.
- C. 위원회에 지명됐던 사람들은 법정에 사람을 지명하는 직원으로 채용된다.
- D. 각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방식을 택한다.
- E. 직원의 규모:
 - (1) 당회가 세운 위원회는 수에 있어 최소 1명의 목사가 있는 3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 (2) 노회가 세운 위원회는 수에 있어 최소 2명의 목사와 1명의 장로가 있는 3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 (3) 재판 사건을 청취하기 위해 노회가 세운 위원회는 수에 있어 최소 3명의 목사와 2명의 장로가 있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정치 형태

- (4) 총회가 세우는 위원회는 수에 있어 최소 4 명의 목사와 3 명의 장로가 있는 7 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 (5) 재판 사건을 청취하기 위해 노회가 세우는 위원회는 최소 5 명의 목사와 4 명의 장로가 있는 9 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 13.9 위원회의 신규 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확고한 신념과 관련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다.
- 13.10 위원회의 회원 가운데 자신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날때는 그러한 변화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소위원회

- 13.11 **목적**
위원회는 ARPC 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추천하며, 지명 법정이나 국이 정한 특별한 방침이나 결정을 행하게 하기 위해 ARPC 의 법정이나 업무 기구가 만드는 조직이다.
- 13.12 **권한과 임무**
- A. 위원회는 지명 법정이나 국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지정된 업무만 해야 한다.
 - B. 위원회의 추천은 지명 법정이나 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C. 법정이나 업무 대행기관의 지시와 명령의 실천을 위한 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 D. 모든 문서 보고에는 회장과 서기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13.13 **구성과 조직**
- A. 지정 법정이나 국은 자기들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와 각 위원회의 직원수 그리고 그들의 임기를 정한다.

정치 형태

- B.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1) 총회장 위원회: 총회장 위원회는 총회장이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세우는 위원회다. 총회장위원회의 첫 번째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회장이 된다.
 - (2) 특별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법정이나 국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언제든지 세울 수 있다. 총회장이나 회장, 추천위원회는 법정이나 국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되면 언제든지 회원을 뽑을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첫 번째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의해 소집되고, 첫 번째 모임 때 조직될 수 있다.
 - (3)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법정이나 국의 특별한 명령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상설 위원회다. 지명 법정이나 국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것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회원을 뽑는다. 상임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또는 지시가 있을 때 지명 법정이나 국에 보고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매년 재조직된다.
- 13.14 모든 위원회의 신입 회원에 선발된 자는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에 대한 자기의 신앙과 확고한 신념과 관련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다.
- 13.15 위원회의 회원 가운데 자기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난 자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제 14 장 수정안 규칙

14.1 기준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은 가을 정기 노회 때 노회에 상정되어 다음 해 봄 정기 노회 때 표결에 붙인다.

A.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서:**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서에 대한 수정안은 총회에 의해 노회의 표결에 붙일 것이 발의되고,

그것을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비준을 위해서는 전체 투표자 가운데 "찬성"한 누적 투표수가 3/4" 이상이 되어야 한다. 총회는 투표 결과를 다음 회의 때 확인한다.

B. **정치 형태, 치리서와 공예배 규칙서:**

정치 형태와 치리서, 공예배 규칙서에 대한 수정안은 총회에 의해 노회의 표결에 붙일 것이 발의되고, 그것을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비준을 위해서는 전체 투표자 가운데 "찬성"한 누적 투표수가 3/4" 이상이 되어야 한다. 총회는 투표 결과를 다음 회의 때 확인한다.

C. **본 장에 설명되어 있는 조항들은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의 수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14. 1. A).**

14.2 각 노회의 서기는 투표에 대한 공식 집계를 기록하여 그것을 총회 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14.3 총회는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노회의 정확한 투표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제안된 수정 항목이 1 가지 이상일 때는 전체에 대해 한 번에 투표할 것인지, 아니면 사안별로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투표를 "예"와 "아니오"란 선택 방식으로 한다는 것도 기술해야 한다.

14.4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나 결정을 위해 교회에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14.5 투표권은 노회에 직접 참석한 회원에 한해 주어진다.

정치 형태

- 14.6 투표 결과가 발표와 동시에 문제가 종결되고,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 된다.
- 14.7 총회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서 수정안의 본질적인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14.8 핵심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안은 상임 개정위원회(Revision Committee)에 보내 검토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수정안이 *정치/형태*의 전반에 걸쳐 다른 조항들에 미치게 될 영향을 보고한다.
- 14.9 개정위원회의 검토는 수정안이 승인을 위한 토론에 붙여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정안은 그것이 투표에 붙여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 14.10 *정치/형태*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수정안과 ARPC의 정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치/형태*의 일반 원리와 기존의 ARPC 훈령에 따라 각자 법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14.11 AARPC의 헌법 자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모든 문제들은 로버트의 법규칙(*Roberts' Rules of Order*, 10th edition)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

정치 형태

정치 형태

ㄱ

기준에 대한 수정안, 14.1.B-C

교회, 14.4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서, 14.1.A

편집, 14.7-14.8

절차, 14.1-14.6

개정위원회, 14.8-14.9

투표하기, 14.2-14.3

투표 유자격자, 14.5

국, 13.1-13.5

권한, 13.2

회중의, 6.7

교리적인 요구 조건, 13.4-13.5

총회, 12.2

직원, 13.3.B

조직, 13.3

노회, 10.3.P, 10.14

목적, 13.1

기관 목사, 9.12, 12.5.D

교회

권한, 1.1

본질, 1.4-1.6

증거, 1.7

교회의 권징, 4.16, 10.3.B-C, 11.16.D, 12.25

교회 재정

감사, 5.11

교회 정치

기초, 2.1

목적, 2.7

교회회원, 4.1, 6.8.E

존, 4.3, 4.8

이전 확인서, 4.9, 4.11-4.14, 11.16.C

성찬 배수자, 4.1

연합의, 4.5

정치 형태

- 비성찬 배수자, 4.2
- 연합을 위한 질문, 4.5
- 의무, 4.4
- 이동, 4. 7, 4.9-4.14, 6.8.F
- 형태, 3.6

교회 지도자

- 최저 연령, 8.1.C
- 집사, 5.1
- 안수 공포, 8.20
- 장로, 6.1
- 선출 절차, 3.24.B, 3.24.G, 8.9-8.14
- 피선거 자격, 8.1, 8.11
- 명예직 신분, 8.8
- 대한 검증, 8.11.C, 11.16.E
- 연합 모임, 5.19-5.20
- 지명, 8.11
- 수, 8.2, 8.9
- 안수식과 임직식, 8.14-8.17
- 안수식 질문, 8.11.C, 8.17
- 감독, 6.8.G-H
- 재선출, 8.21-8.24
- 순환기와 비순기, 8.5-8.7
- 기준 조건, 8.11.C
- 직분의 임기, 8.4
- 훈련, 6.8.G, 8.3
- 이동, 4.10, 8.22, 8.24
- 투표, 8.12

교회 직분, 2.9-2.12

- 교회 개척자, 6.11, 9.10, 11.6.D, 11.17-11.22
- 소명, 11.17-11.18, 11.20, 11.24
- 감독, 11.16.H
- 의무, 11.18

교회 재산

- 재산 참고

교회 직원, 6.8.K

정치 형태

교회 재무 담당자

재무 담당자 참고

공동의회, 3.24-3.25, 6.8.T, 8.10, 9.56.B, 9.57.B, 9.58.C

사회자, 3.25.H

절차, 3.25.J

의결정족수, 3.25.E, 3.25.J.(2)

투표, 3.25.G

투표권자, 3.25.F, 3.25.I

권징

교회의 권징 참고

국의 가입을 위한 교리적 요구 사항, 13.4-13.5, 13.9, 13.13, 13.14

교육 프로그램, 6.8.J

권한과 의무 소책자 *Manual of Authorities and Duties*, 12.12, 12.25.

D

기혼자, 6.9.B, 11.9

구제 사역, 5.5

개척 교회, 10.1, 10.3.O, 11.1

정의, 11.1

형성, 11.3-11.5

종직자, 11.6

조직, 11.23-11.24

감독권, 11.7

목적, 11.2

당회

당회, 임시의 참고

예배, 11.16.F

교회 개척자

교회 개척자 참고

가르치는 자, 9.7

L

노회

권한, 10.2-10.3

회의의 소집, 10.12-10.13

정치 형태

- 형성, 10.5-10.8
- 장로 대표, 10.7, 10.9
- 회의의 빈도, 10.11-10.13
- 합병, 10.14
- 종직자, 10.10
- 목적, 10.1
- 의결 정족수, 10.11.A, 10.12
- 의무, 10.4

ㄷ

당회

- 교회 재산, 6.8.U
- 회의의 소집, 6.15
- 구성, 11.6
- 모임의 회수, 6.15
- 당회장, 6.10-6.11, 6.14
- 종직자, 6.12
- 의결 정족수, 6.17
- 집사직과의 관계, 6.8.I
- 상위 법정과의 관계, 6.8.P, 6.9.C, 8.25
- 임무, 6.6-6.9
- 투표, 6.18
- 당회, 예비적인, 11.11-11.16
 - 구성, 11.6
 - 종직자, 11.16
 - 감독권, 11.15
 - 책임 11.14, 11.16

ㄹ

목사, 목회자

- 부, 9.47, 9.48, 9.51
- 자비량의, 9.11
- 청빙, 3.24.A
- 청빙, 9.46-9.54

정치 형태

- 매년 재검토, 연간 재검토, 9.54.H.(4), 9.54.N
- 절차, 9.54
- 조건, 9.54.H, 9.54.N
- 다른 사역들에 대한 청빙, 9.66-9.67
- 이전 동의서, 9.62.C, 9.63.B
- 투표 인증서, 12.5.E

ㅂ

부목사

- 목회자...부, 준 참고
- 부속 예배실, 3.3, 10.1, 11.3
- 복음전도자, 9.8, 11.19
- 의무, 11.22
- 보험, 9.54.H.(2)

ㅅ

세례, 4.5.D, 6.8.D, 6.9.B, 11.9, 11.16.B

소명

- 목회자... 소명 참고
 - 소위원회, 13.10-13.13
 - 권한, 13.11
 - 회중의, 3.25.J, 6.7
 - 교리적 요구, 13.13
 - 총회, 12.2
 - 조직, 13.12
 - 노회, 10.3.P, 10.14
 - 목적, 13.10
 - 형태, 13.12.B
 - 사망한 자, 6.9.B, 11.9
 - 소수 민족을 위한 사역, 10. 1
- 성령
- 권세, 1.3
 - 사명 선언문, 1.10
 - 선교사, 9.9, 12.5.B

정치 형태

- 신앙 고백, 4.5
- 순환기와 비순환기
 - 교회의 증직자 참고
- 성례, 6.8.C, 11.16.F
- 상임위원회, 13.12.B.(3)
 - 소위원회 참고
- 신학생, 9.14-9.35, 10.3.I-J
 - 검증, 9.16, 9.24-9.27
 - 인증, 9.22-9.24
 - 인증 조건, 9.24.I-L
 - 인증 서약, 9.24.F
 - 안수, 9.25-9.35
 - 안수식, 9.28-9.35
 - 안수식 서약, 9.30
 - 의무, 9.18, 9.24.J-L
 - 허입 절차, 9.20-9.21
 - 이동, 9.62.A
 - 노회 관리 아래, 9.17-9.18
- 십일조, 5.6
- 수탁자, 2.19-12.20, 3.10, 10.14
- 서원
 - 인증, 9.24.F
 - 회원, 4.5
 - 안수(목사), 9.30
 - 안수(증직자), 8.17
 - 관리 아래 들어오는 학생들, 9.20

○

- 연합개혁장로교회정치
 - 헌법, 2.13
 - 역사, 2.5-2.6
- 임명식, 7.6
- 위원회, 13.6-13.9
 - 권한, 13.7

정치 형태

구성, 13. 8.E
회중의, 6.7
교리적 요구, 13.9
총회, 12.2
종직자, 13.8.A
조직, 13.8
노회, 10.3.P, 10.14
목적, 13.6
의결 정족수, 13.8.D

예수 그리스도

지도자, 1.2

양손을 엮음, 7.2, 7.6, 8.19, 9.31

의사록

공동 의회, 3.25.J
총회, 12.17
노회, 9.37, 10.4.A
당회의, 6.9, 8.25

안수

소명 7.5
회중의 임무, 9.43
목사의 임무, 9.43
기간 동안, 7.4
본질, 7.1
위한 사역, 7.3, 9.29-9.33
서약, 9.40-9.41

임시당회

당회, 임시의 참고

은퇴 계획, 9.54.H.(3)

웨스트민스터 총회

교회정치형태, 2.4

예배

집행, 6.8.L-M

ㅈ

직분에 대한 소명, 2.11, 7.5, 8.1.E

정치 형태

집사

자격, 5.2-5.4

임무, 5.5-5.9

집사직

회의의 소집, 5.13

모임의 회수, 5.12

회중, 5.21

종직자, 5.10

조직, 5.10

의결 정족수, 5.14

당회와의 관계, 5.17-5.21

투표, 5.15

장로

당회 참고

면담, 6.8.B

재판사건, 13.7, 13.8.E.(3), 13.8.E.(5)

자격, 6.2-6.3

회중과의 관계, 6.4

심방, 6.8.A

자격인증자

신학생 참고

직분의 동등성, 2.10, 9.4, 9.5

직무 기술서

사명 선언문 참고

장로교 정치

역사, 2.3

절차 규칙, 14.10-14.11

재산

회중적인, 3.11-3.13, 3.24, 5.8, 6.8.U

총회, 12.20-12.21

개척 교회, 11.10

노회, 10.3.F-G, 10.14

정치 형태

총회

- 권한, 12.2, 12.23-12.24
- 회의의 소집, 12.10
- 교회의 권징, 12.25
- 구성, 12.6-12.8
- 국의 가입을 위한 교리적인 요구 조건., 13.14
- 장로 대표, 12.7-12.8, 12.14
- 임명자, 12.24.C
- 집행부, 12.12, 12.23.A.(2), 12.23.B.(2)
- 모임의 회수, 12.4, 12.9
- 법인, 12.18-12.20
- 교회 내적 관계, 12.24.G-H
- 증직자, 12.6, 12.11-12.12
- 절차, 12.15-12.17
- 목적, 12.1-12.3
- 의결 정족수, 12.13
- 노회와의 관계, 12.22
- 특수 목회, 12.26
- 수탁자, 12.19
- 투표, 12.5.E, 12.8, 12.10.D
- 총회장 위원회, 13.12.B.(1)
- 소위원회 참고
- 청지기직, 5.6

ㄷ

- 탐사 작업 11.8
- 개척 교회 참고
- 특별위원회, 13.12.B.(2)
- 소위원회 참고

ㅎ

회중

- 예산안, 3.24.D
- 해지, 3.21-3.23, 4.13

정치 형태

명칭, 3.14

종직자, 3.8-3.9

목적, 3.1-3.2

허입, 12.23

사례비, 3.24.F

구성, 3.4-3.7

합병, 3.15-3.19

회수, 3.13

회원

교회 회원 참고

헌금, 5.7, 6.8.N

회계 담당자, 5.10-5.11